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3학년도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 영향
및 활용방안 연구

- 주요 28개국 RDP 체결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OK-U.S. RDP and Utilizing Methods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28 RDP signed Countries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 태 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 영향
및 활용방안 연구

- 주요 28개국 RDP 체결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OK-U.S. RDP and Utilizing Methods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28 RDP signed Countries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 태 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 영향 및 활용방안 연구

- 주요 28개국 RDP 체결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OK-U.S. RDP and Utilizing Methods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28 RDP signed Countries -

지도교수 정 석 재

이 논문을 국방경영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22일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 태 준

박태준의 국방경영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손채봉



심사위원 김장엽



심사위원 천종응



심사위원 정용기



심사위원 정석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4년 6월 22일

감사의 글

2008년 방위사업학과에 받을 디딘 후 9년이 지난 2016년에 수료를 하고, 또 다시 9년이 지난 2024년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미천한 능력에도 3년간의 미국 파견근무, 비상계획관, 2권의 책 발간 등 벅찬 도전을 함께 거치면서 지치지 않고 학위과정도 마치게 된 것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감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세심한 지도를 해주셨던 존경하는 손채봉, 김장엽, 천종웅, 정용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날카로운 학문적 지도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셨던 정석재 교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리며, 퇴직하신 심상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견을 나누어 주신 K-방산 최고의 전문가 김한경, 김호성, 김종출, 박민우, 이광현, 유형곤, 장원준, 최기일(가나다 순) 박사님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식 걱정애 먼 곳에서 아직도 마음 편하지 않으실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끝으로 늘 자랑스럽고 힘이 되어주는 나의 훈장(勳章) 사랑하는 아들, 평생을 함께 하며 어려움을 인내하며 지켜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베프 아내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국문 요약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 영향 및 활용방안 연구

- 주요 28개국 RDP 체결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상호국방조달협정(이하 RDP)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RDP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8개국의 RDP 협정서 조문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고 그 함의(含意)와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P 체결로 국내 방위산업의 급격한 잠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RDP 주요국의 방산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체결하는 FTA와는 달리 RDP는 미국이 우방국 또는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종결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으며, RDP 체결한 28개국 중에서 아직까지 RDP를 종결한 국가는 없었다. 둘째, RDP 체결하여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K-방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Tool) 또는 소통의 프레임워크(Framework)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BAA 면제 혜택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RDP를 체결한다고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나친 우려나 기대를 경계하고 RDP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RDP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한국형

RDP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연구개발 등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면 K-방산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력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Needs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함정은 한미가 서로 협력하여 윈-윈 할 수 있는 RDP 협력모델로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미국과의 RDP 체결을 앞두고 처음으로 RDP를 체결한 28개국 전체의 협정서를 대상으로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RDP 주요국에 대한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시장의 잠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부가 2024년 RDP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협상 및 향후 RDP 체결 이후 활용방안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절충교역 등 정책추진 방향과 더불어 상호 윈-윈 가능한 한국형 협력모델로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사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방위산업은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외생변수를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방산수출입 실적만을 대상으로 RDP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별 SIPRI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RDP 체결 전후의 수출입 증감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RDP 영향의 추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더 신뢰성 있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 실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RDP를 체결 전후의 국가별 방위산업의 다양한 외생변수에 대한 자료를 축적한다면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상호국방조달협정, 방산협력, 방산수출, 공동연구개발, 지속가능성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OK-U.S. RDP and Utilizing Methods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28 RDP signed Countr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igning of the Korea-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hereafter RDP), which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ahead as a national task, on domestic defense industries and to find ways to utilize RDP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K-Defense Industry. To this end, the provisions of the RDP agreement of 28 countries were compared by major items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and effects.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ng of the RDP will not result in a rapid erosion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This was also confirmed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mport and export performance of major RDP signed countries. Unlike the FTA for the purpose of economic gain, RDP is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with allies and has safety measures such as setting an expiration date and can termination at any time without disadvantage. Second, RDP should be used as a tool for expanding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ing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or as a framework for

communication. The US government thoroughly controls the benefits of BAA exemptions in accordance with its own priority policy such as Buy America Act, so signing an RDP does not result in a sharp increase in expor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RDP as a tool to increase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being wary of undue expectations or concerns. Third, in order to achieve a substantial RDP effect,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in a way that meets each other's nee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to present an appropriate Korean RDP cooperation model. Strengthening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uch as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ompensate for K-Defense Industry's weaknesses and expand its strength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world-class ship technology of South Korea and the US struggling with maritime power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the ship sector will be a good example as a Korean RDP cooperation model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win-win.

This study has academic and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impact of the RDP was examined based on the agreements of all 28 countries that signed the RDP for the first time before signing RD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possibility of encroaching the Korea's domestic defense market was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imports and exports performance for major RDP countries. Second, a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onclusion of the RDP in 2024, it suggested the utilization methods in a timely manner after negotiations and future

RDP implementation. Specifically, along with the direction of policy promotion such as joint R&D and Offset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e warship building and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program was proposed as a mutually win-win Korean cooperative model.

However, there were also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 considering that the defense industry is generally affected by various exogenous variables,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ll exogenous variables by country, the impact of RDP was analyzed only with the defense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 Second, the reliability of SIPRI import and export performance data by country is also pointed out as a limitation of the study. However, by looking at the trend of increase and de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before and after the RDP was signed, it was judged that there would be no significant impact on indirectly confirming the RDP impact. In the future, objectivity can be further improved by securing more reliable data on import and export performance of each country and accumulating data on various exogenous variables of each country's defense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RDP signing.

Key words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 Defense Cooperation, Defense Export,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Sustainability

차 례

감사의 글	i
국문요약	ii
Abstract	iv
차례	vii
그림차례	ix
표차례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상호국방조달협정 개념 및 이해	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7
제3절 RDP와 방산수출입 실적 데이터 연관성	29
제3장 RDP 협정문 분석	33
제1절 28개 RDP 체결국 협정서 비교 분석	33
제2절 종합 및 시사점	72
제4장 RDP 영향 분석	76
제1절 RDP 주요국의 수출입 실적 변화	76
제2절 종합 및 시사점	87

제5장 RDP 활용방안	93
제1절 기본방향	93
제2절 한국형 RDP 협력모델	103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24
제6장 결 론	126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2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28
참고문헌	130
부 록	136

그림 차례

<그림 1> 2011년~2023년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수주 현황	3
<그림 2> 미국의 국방비 지출 추세	6
<그림 3> 미국 연방관보 : 한국과의 RDP 협상 추진	34
<그림 4>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77
<그림 5>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77
<그림 6>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78
<그림 7>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78
<그림 8>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79
<그림 9> 미국으로의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79
<그림 10>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80
<그림 11>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80
<그림 12>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80
<그림 13>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0년~2022년)	81
<그림 14>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0년~2022년)	81
<그림 15>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0년~2022년)	82
<그림 16>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7년~2022년)	82
<그림 17>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7년~2022년)	83
<그림 18>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7년~2022년)	83
<그림 19>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82년~2022년)	84
<그림 20>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82년~2022년)	84
<그림 21>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82년~2022년)	84

<그림 22>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5년~2022년)	85
<그림 23>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5년~2022년)	85
<그림 24>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5년~2022년)	86
<그림 25>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86
<그림 26>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87
<그림 27>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87
<그림 28> 1980년~2015년 미국 방산업체 인수합병	108
<그림 29>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 현황	110
<그림 30> 회계연도 2010년~2024년 미국 함정 건조 예산 변화	113
<그림 31> 미국 해군의 4대 국영 조선소	114
<그림 32> 미국 해군 조선소 업무량 및 인력 변동 현황	115
<그림 33> 미국 해군 조선소 평균 가중치 변화(2016년~2020년)	116
<그림 34> 2022년~2031년간 지역별 함정 MRO 시장 성장률	123

표 차례

<표 1> 2022년 및 2023년 기준 세계 방산수출 순위 / 점유율 비교	4
<표 2> 방산수입 상위 20개국의 2019년~2023년 주요 수입 현황	8
<표 3> 2019년~2023년간 대미 방산수출	9
<표 4> 본 논문의 연구문제	14
<표 5> 본 논문의 연구 흐름도	15
<표 6> RDP 체결국의 NATO 가입 및 방산수출실적	19
<표 7> RDP 적격국가	20
<표 8> 적격국가에 대한 BAA 등의 면제	21
<표 9> 미국 연방조달규정의 미국산 인정비율	22
<표 10> RDP 기본협정서 구성	24
<표 11> RDP 체결국 중 분석대상 8개국	31
<표 12> RDP 체결목적	35
<표 13> RDP와 FTA 비교	38
<표 14> RDP 국가들의 부속서 체결 현황	43
<표 15> RDP 부속서의 효력	46
<표 16> RDP 유효기간 및 연장방식 유형	49
<표 17> RDP 종결절차	51
<표 18> RDP 협력범위	53
<표 19> RDP MOU 또는 Agreement 체결 현황	59
<표 20> 회계연도 2021년 BAA 면제 건수 및 금액	61
<표 21> RDP 체결국가들의 BAA 면제 유형	62

<표 22>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의 BAA 면제 유형	64
<표 23> RDP 28개국의 절충교역 협력	65
<표 24> 국외 상업구매 및 FMS 구매 현황	65
<표 25> 국가별 국외 상업구매 현황	66
<표 26> FMS에서의 절충교역 비용과 관련된 미국 규정	67
<표 27> 2018~2022년 국가별 국외구매 대비 절충교역 확보가치	68
<표 28> 최근 5년간 국내 참여업체별 절충교역 확보가치	71
<표 29> RDP 이행을 위한 정기회의	74
<표 30> 분석대상국의 RDP 체결 이후 수출입 실적 변화 요약	88
<표 31> 2019~2023년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	94
<표 32> 2019~2023년 세계 방산수입 실적	96
<표 33> 2019~2023년 미국의 국가별 방산수출 실적	96
<표 34> 2019~2023년 한국의 주요 수출국	9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1 글로벌 안보환경

미중 패권경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분쟁으로 본격화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제·정치·군사·기술·가치·이념·가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바이든은 이념과 가치, 바이오·반도체·인공지능 등의 기술경쟁, 신장 및 홍콩 등 인권 문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이 전방위적인 포위전략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력의 공세적인 팽창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를 위해 쿼드¹⁾, 오키스²⁾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베트남 등 중국과 분쟁중인 국가들과 함께 전략적 봉쇄를 달성함으로써 중국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의 패권경쟁은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2022년 한미 정상은 과거 안보·군사 위주의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확장시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호국방

1) 쿼드(QUAD) : 인도-태평양전략 당사자인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맹국의 연대 강화를 주장하며, 호주·인도·일본과의 QUAD 안보협의체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포함하는 ‘QUAD Plus’를 구상 중이다.

2) 오키스(AUKUS) : 2021년 체결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간의 군사동맹

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MOU / Agreement, 이하 RDP)³⁾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참여, 공동연구개발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23년 4월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RDP 체결을 촉구하였으며,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첨단기술, 경제, 인적교류를 포함하는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미 포괄적 동맹관계가 일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안보·군사 위주의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됨에 따라 K-방산도 미국과 긴밀하고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K-방산 지속가능성 확보

과거 세계 방산시장에서 저평가되었던 K-방산은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에 힘입어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인도(Delivery), 원활한 후속군수지원 등을 강점으로 최고의 수출실적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다. 2022년 대규모 폴란드 방산수출에 이어 인접한 루마니아로 확대되는 등 유럽 수출길이 열렸으며, 동유럽·중동·북미·호주·아세안 등에서도 K-방산 열기가 확산되어 12개국에 불과하던 수출국은 2018년~2022년 기준 24개국으로 증가하였다.⁴⁾ K-방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동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K239 천무 다련장로켓을 수출하였으며, 인접한 루마니아에도 대규모 방산수출을 추진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3) 상호국방조달협정은 협정서(Agreement) 또는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된다. 체결되는 형식에 따라 상호국방조달 양해각서는 RDP-MOU, 상호국방조달 협정서는 RDP-A로 각각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두 'RDP'로 표현하기로 한다.

4) 방위사업청. (2024). 「2024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

K-방산의 약진에 힘입어 글로벌 방산수출 4위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2011년~2023년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수주 현황

<Fig. 1> Global Defense Exports of K-Defense Industry from 2011 to 2023

하지만,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역대급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K-방산의 성장세가 계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K-방산의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은 2.0%로서 10위⁵⁾에 불과하다. 정부가 목표한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위 중국은 뛰어넘어야 하지만, K-방산의 2023년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은 2.0%(10위)로서 전년도 2.4%(9위)에 비해 떨어졌다. 4위 중국과는 2022년 2.8%의 격차가 2023년에는 3.8%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결과적

5)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국가별 방산수출입 순위는 2024년 SIPRI 발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의 세계 방산수출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으로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2022년 방산수출 점유율을 2.3%에서 5.2%로 확대해야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2.0%에서 5.8%로 약 3배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방산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방산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K-방산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만큼 다른 국가들의 방산수출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출 상승세가 K-방산의 수출 역량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표 1> 2022년 및 2023년 기준 세계 방산수출 순위 / 점유율 비교

<Table 1> Rankings & Ratio Comparison of Global Defense Export as of 2022 and 2023

2022년 기준(2018년~2022년)			2023년 기준(2019년~2023년)		
순위	국 가	방산수출 점유율	순위	국 가	방산수출 점유율
1	미 국	40.0 %	1	미 국	41.7 %
2	프 랑 스	10.8 %	2	프 랑 스	10.9 %
3	러 시 아	16.0 %	3	러 시 아	10.5 %
4	중 국	5.2 %	4	중 국	5.8 %
5	독 일	4.2 %	5	독 일	5.6 %
6	이탈리아	3.8 %	6	이탈리아	4.3 %
7	영 국	3.2 %	7	영 국	3.7 %
8	스 페 인	2.6 %	8	스 페 인	2.7 %
9	한 국	2.4 %	9	이스라엘	2.5 %
10	이스라엘	2.3 %	10	한 국	2.0 %

<표 1>에서와 같이 세계 방산 10위 이내 국가 중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전년도 기준 대비 방산수출 점유율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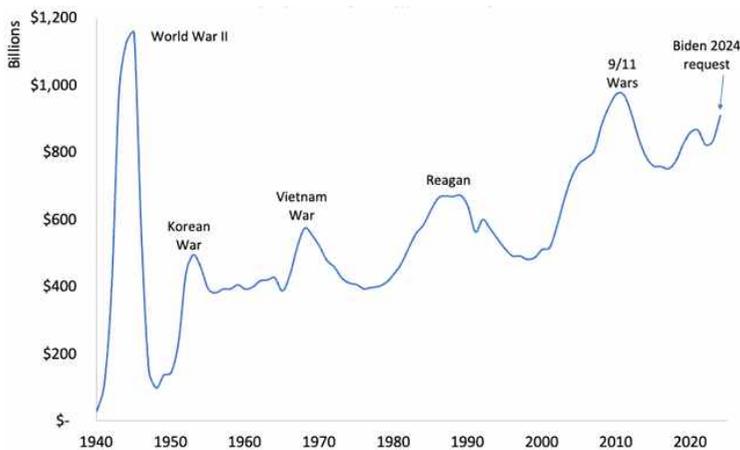
또한, 2024년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등 유럽에서는 K-방산에 대한 견제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K-방산의 해외 수주 실패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3년 노르웨이는 차기전차 사업에서 K-2 흑표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를 채택했으며, 2024년 영국은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의 K-9 대신 독일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정했다. K-방산이 폴란드를 발판으로 유럽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면서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방산수출 강대국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전방위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⁶⁾

이처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에서 선진국에 우위를 달성하여 4위에 진입하고, 지금의 K-방산이 수출실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세계 방산의 활황에 힘입어 K-방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낼 만큼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일시적인 호황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부 및 방산업체의 수출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고 현재 방산수출 실적을 넘어서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낌없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6) 김동현, “마크롱, 韓 무기구매 자제… K-방산 견제 나선 유럽”, 202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100031>, 검색일: 2024.06.18.)

1.3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진출 확대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K-방산이 미국시장에 진출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방산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와 같이 미국 국방비는 2011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였지만,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러한 증가세는 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2> 미국의 국방비 지출 추세⁷⁾

<Fig. 3> U.S. Defense Spending Trends

SIPRI가 2024년에 발표한 '2023 세계 군비 지출 동향'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분쟁이 고조되면서 각국은 유례없는 국

7) Lindsay Koshgarian, "U.S. Military Spending is Approaching \$1 Trillion", 2023,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ttps://www.nationalpriorities.org/blog/2023/03/15/one-highest-military-budgets-history/>, 검색일: 2024.06.18.)

방비를 지출하였다. 2023년에 지출한 세계 국방비는 2조 4400억 달러로서 SIPRI가 집계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고로 많은 금액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은 9,160억 달러(1,262조원)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3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체의 1/3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에 미국은 국방비를 8,860억 달러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국방비 증가와 함께 미국 방산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로 발주되는 고가 첨단 무기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K-방산이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방산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방산수출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2020년 산업연구원도 미군의 현대화 정책과 더불어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중심으로 군사력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미국을 2020년~2024년 5년 동안 가장 유망한 방산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을 선정한 바 있다.⁸⁾

둘째,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심각한 한미 방산교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SIPRI 최근 5년간 국제 방산교역 추세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과의 방산교역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⁹⁾ 한국의 방산수입 실적은 세계 9위로서 주로 미국(72%), 독일(15%), 프랑스(9.3%) 등의 국가들로부터 수입하였다. 이처럼 해외 구매의 72%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지만, 한국의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8) 김미정, 안영수, & 윤정선. (2020). 「2020 KIET(산업연구원) 방산수출 10대 유망국」. (KIET 산업연구원, 136-138).

9)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2023, (SIPRI,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4-03/fs_2403_at_2023.pdf, 검색일: 2024.03.17.)

<표 2> 방산수입 상위 10개국의 2019년~2023년 주요 수입 현황

<Table 2> Major Defense Imports from 2019 to 2023 of the Top 20

Rank	Importer	Share of global arms imports(%)		Percent change from 2014-18 to 2019-23	Main suppliers and their share of importer's total imports(%, 2019-23)					
		2019-23	2014-18		1st		2nd		3rd	
1	India	9.8	9.1	4.7	Russia	36	France	33	USA	13
2	Saudi Arabia	8.4	11	-28	USA	75	France	7.6	Spain	7.0
3	Qatar	7.6	1.5	396	USA	45	France	25	Italy	15
4	Ukraine	4.9	0.1	6,633	USA	39	Germany	14	Poland	13
5	Pakistan	4.3	2.9	43	China	82	Sweden	4.0	Tiirkiye	3.8
6	Japan	4.1	1.5	15.5	USA	97	UK	1.8	Germany	0.4
7	Egypt	4.0	5.3	-26	Germany	27	Italy	22	Russia	20
8	Australia	3.7	4.6	-21	USA	80	Spain	15	Switzerland	2.3
9	South Korea	3.1	2.8	6.5	USA	72	Germany	15	France	9.3
10	China	2.9	4.9	-44	Russia	77	France	13	Ukraine	8.2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국 방산수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다. <표 3>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 방산수출을 한 국가들의 수출실적이다. 한국의 수출실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이한 것은 미국으로 방산수출 실적이 있는 상위 15개국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RDP를 체결한 국가들이 11개국에 이른다. 이들 RDP 체결국의 미국 방산수출 비중은 86%에 육박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12위), 스웨덴(13위), 호주(16위), 노르웨이(19위) 등은 세계 방산수출 10위인 한국보다 수출실적이 낮음에도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미국의 방산수입은 RDP를 체결하여 미국과 방산협력을 추진해 온 RDP 체결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들에 비해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 한국이 RDP를 신속히 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심각한 방산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RDP를 체결하여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

착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3> 2019년~2023년간 대미 방산수출¹⁰⁾

<Table 3>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2019 to 2023

순위	국가	미국수출 *	RDP 체결	순위	국가	미국수출 *	RDP 체결
1	영 국	1,014(25%)	1975	9	노르웨이	182(4.6%)	1978
2	네덜란드	481(12%)	1978	10	싱가포르	129(3.2%)	미체결
3	프 랑 스	404(10%)	1978	11	남아프리카	96(2.4%)	미체결
4	독 일	336(8.4%)	1978	12	캐 나 다	96(2.4%)	1963
5	이탈리아	298(7.5%)	1978	13	호 주	90(2.3%)	1995
6	스 웨 덴	296(7.4%)	1987	14	브 라 질	14(0.3%)	미체결
7	스 페 인	241(6.0%)	1982	15	스 위 스	13(0.3%)	1975
8	요 르 단	197(4.9%)	미체결				

* 수출실적 : 백만 단위로 표현되는 SIPRI 추세지표값(Trend Indicator Values)

셋째, 미국 방산시장에 수출함으로써 K-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민수 분야도 그러하지만, 글로벌 방산시장에서도 브랜드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 방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무기체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가제품이 대부분이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매국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브랜드는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계 최고 방산수출국인 미국으로 수출하였다는 것만으로

10)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2019~2023)”, 2024, (SIPRI, <https://armstransfers.sipri.org/ArmsTransfer/CSVResult>, 검색일: 2024.06.10.)

도 K-방산의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RDP 체결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이미 검증된 K-방산의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친다면 더 많은 수출 기회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 방산 네트워크를 매개로 제3국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방산시장은 국제 표준의 적용 등 엄격한 규제와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K-방산이 품질을 인정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 방산시장에서의 후광 효과를 기반으로 세계 방산시장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유럽 등 우방국에 대한 방산수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5G,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우방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개방형 공급망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진영과 미국, NATO 등 자유주의 진영으로 분리된 폐쇄형 공급망으로 재편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전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RDP 체결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RDP를 체결하여 국방조달의 합리화(Rationalization), 미군 등 우방국 장비와의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을 기반으로 합동군사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안보를 한층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여 유럽 등 우방국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RDP 체결을 계기로 중저가 위주의 K-방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절충교역을 통한 일방적인 기술이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교류하고 및 연구인력 교환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 방산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최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확인하고, 양방향 기술교류를 통해 기술수준을 한층 격상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 등 방산협력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RDP를 조속히 체결하여 우수한 미국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현지생산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방국에 대한 방산수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미국 방산수출의 걸림들을 해결하는 열쇠, RD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방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법, 규범 및 제도 등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높여 왔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연방조달시장에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이하 BAA)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추가비용을 부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제품과 비교하여 성

능이 우월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 방산시장은 다양한 법과 제도로 복잡하게 보호되고 있어 그러한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차별적인 비용 부과 없이 미국의 방산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걸림돌을 푸는 첫 걸음이 바로 RDP 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 정부가 RDP를 체결한 국가들에 한하여 방산시장에서의 차별적인 비용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K-방산의 수출 성과를 글로벌 방산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RDP를 체결하여 한미 방산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말에 개최된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RDP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RDP를 통해 미국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상호호혜¹¹⁾적으로 한국도 방산시장을 개방해야 하므로 미국과의 방산교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으면서 추진이 보류되었다. 하지만 국내 방산시장의 성숙 및 미국 방산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RDP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대통령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RDP 체결을 국정과제¹²⁾로 추진할 것을 약

11) 상호호혜(Reciprocity) : RDP는 미국과 상대국과의 상호호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대방 국가가 우호적이면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

12) 120대 국정과제 중 106번 “첨단전력 건설 및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상호국방 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상호 방산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속하였으며, 2022년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범정부 TF를 출범하여 2024년 연내 RDP 체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RDP 체결이 방산수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서 RDP 제도에 대한 분석과 RDP 체결국 사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RDP 체결을 통해 K-방산의 장점은 극대화하여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반면 약점은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방산시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8개 RDP 체결국 전체를 대상으로 협정서 항목별 비교를 통해 법적인 해석 및 그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홍영식(2018), 김만기(2022) 등 일부는 앞선 연구에서 RDP 체결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연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홍영식은 28개국 중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만기는 네덜란드·호주·일본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3개국 모두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세계 10위 한국과는 방위산업 여건과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를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여 그 합의 및 체결국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분석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RDP 체결국의 방산수출입 실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RDP 체결 이후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겠다. 셋째, 앞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K-방산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기 위한 활용방안 및 한국형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국방부와 RDP를 체결한 28개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RDP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RDP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어떠한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해당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RDP와 관련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RDP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RDP 관련 법규 및 제도를 확인하고, 미국과 RDP를 체결한 28개국 협정서를 조문별로 상호 비교하여 그 함의 및 해당국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RDP를 체결한 방산수출 강대국의 RDP 전후의 방산 수출입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RDP가 방위산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논문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표 4> 본 논문의 연구문제

<Table 4> Research Coverage of this Study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문제 1 : RDP는 어떠한 제도인가?• 연구문제 2 : 세계 28개국의 RDP 협정서 및 방산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RDP 체결로 인하여 체결국 방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 K-방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연구문제 4 : 효과적인 RDP 활용을 위한 한국형 협력모델은 무엇인가? |
|--|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은 RD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한미 정부가 윈-윈 할 수 있는 한국형 RDP 협력모델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로서 미국 상호국방조달협정의 개념 및 주요 특성 등을 설명하고 RDP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어 RDP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체결국의 수출입 실적과 RDP 영향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제3장은 RDP를 체결한 28국의 협정서 전체를 조문별로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고, 협정문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한다. 제4장은 RDP 주요 체결국의 체결 전후 수출입 실적 데이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RDP 체결로 방산수출입 또는 방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5장은 앞서 분석한 RDP 속성과 그로 인한 영향을 토대로 미국과의 RDP를 어떠한 형태로 체결해야 하며, 또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RD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제6장은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의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범위 및 방법을 단계별로 도식화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본 논문의 연구 흐름도

<Table 5> Research Flowchart of this Study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RDP 개념 및 이해	선행연구 검토	수출입 실적과 RDP 영향 연관성



RDP 협정서 분석	
28개국 협정서 비교, 함의 및 영향 분석	종합 및 시사점



RDP 활용방안		
기본방향	한국형 협력모델	종합 및 시사점



결 론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상호국방조달협정 개념 및 이해

1. 개념적 정의

RDP는 미국이 동맹국 또는 우방국과 국방 장비(Materials) 및 용역(Services)의 구매 및 조달 등을 포함한 상호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즉,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또는 우방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협력의 범위, 이행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 RDP를 체결한 상대국과의 상호 방산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방산 협력과 교역을 촉진시키고 양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일부에서는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RDP에 생소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RDP를 FTA와 같은 제도로 오해하여 국내 방산시장을 모두 개방해야 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오기도 했다.

2. RDP 체결 목적

미국 정부는 RDP 체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동맹국 또는 우방국과 국방 장비에 대한 합리화(Rationaliz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촉진¹³⁾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RDP 체결을 통해

13) “Negotiation of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2024,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2/23/2024-03705/negotiation-of-a-reciprocal-defense-procurement-agreement-with-the-republic-of-korea>, 검색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미국 합동참모의장 지시서¹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화는 RDP를 체결한 우방국의 국방자원을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방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미국과 RDP를 체결한 우방국 상호간에 군수품, 장비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군수비용을 최소화하고 중복된 개발 및 구매를 방지함으로써 미국 및 RDP 체결국 모두의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둘째, 표준화는 미국이 체결국과 다양한 군수품 및 장비를 호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립하고 각국이 보유한 장비들에 대하여 같은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표준화는 상호호환성을 높여 유지보수 및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므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RDP는 다수의 체결국 상호 간의 표준을 포함하므로 한국이 미국과 RDP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중심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상호운용성은 전술적, 작전적 및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RDP 체결국 상호 간에 다양한 군수품이나 장비를 제약 없이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연합작전이나 국제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RDP 체결국¹⁵⁾

미국은 1963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4년 5월 현재 28개국과 RDP를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인도와 2024년부터는 한국, 브라질과 RDP 체결을 위한

일: 2024.04.20.)

14)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Instruction: Rationalization, Standarization, And Interoperability Activities”, (2019), (U.S. Joint Chiefs Of Staff, CJCSI 2700.01H)

15) 박태준. (2024).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8(3)).

실무절차가 진행 중이다. RDP 체결한 국가들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세계 방산수출 15위 이내에 RDP를 체결한 11개국에 포함될 것을 알 수 있다.

<표 6> RDP 체결국의 NATO 가입 및 방산수출실적(2019년~2023년)¹⁶⁾
 <Table 6> NATO Memberships & Defense Exports(2019-2023) of RDP Signed Countries

구분	체결국	RDP 체결 연도	NATO 가입 연도	수출실적 (2019~2023)		구분	체결국	RDP 체결 연도	NATO 가입 연도	수출실적 (2019~2023)	
				점유율 (%)	수출 순위					점유율 (%)	수출 순위
1	캐나다	1963	1949	0.65	15위	15	스웨덴	1987	2024	0.85	13위
2	스위스	1975	×	0.55	17위	16	이스라엘	1987	×	2.45	9위
3	영국	1975	1949	3.67	7위	17	이집트	1988	×	0.07	35위
4	노르웨이	1978	1949	0.36	19위	18	오스트리아	1991	×	0.02	47위
5	프랑스	1978	1949	10.92	2위	19	핀란드	1991	2023	0.09	33위
6	네덜란드	1978	1949	1.22	12위	20	호주	1995	×	0.61	16위
7	이탈리아	1978	1949	4.29	6위	21	룩셈부르크	2010	1949	0.00	66위
8	독일	1978	1955	5.66	5위	22	폴란드	2011	1999	0.65	14위
9	포르투갈	1979	1949	0.05	37위	23	체코	2012	1999	0.22	27위
10	벨기에	1979	1949	0.26	22위	24	슬로베니아	2016	2004	0.03	44위
11	덴마크	1980	1949	0.10	32위	25	일본	2016	×	0.01	54위
12	튀르키예	1980	1952	1.55	11위	26	에스토니아	2016	2004	0.02	50위
13	스페인	1982	1982	2.73	8위	27	라트비아	2017	2004	0.01	51위
14	그리스	1986	1952	0.01	52위	28	리투아니아	2021	2004	0.03	46위

16)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2019~2023)”, 2024, (SIPRI, <https://armstransfers.sipri.org/ArmsTransfer/CSVResult>, 검색일: 2024.06.10.)

RDP 체결 당사국인 미국(1위),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3위) 및 중국(4위)을 제외하면 방산수출 상위 15개국에 포함된 미국 우방국 중에서는 한국(10위)만이 RDP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또한 RDP를 체결국 중 대다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국가들인데, 이는 RDP의 역사적 배경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4. RDP 체결국에 대한 혜택

미국은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공공조달에 있어 미국산 우선구매 등과 같이 해외 방산업체에 불리한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하여 방산시장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RDP 체결국을 적격국가(Qualifying Countries)로 대우하면서, 미국 방산업체와 불공정한 가격의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Public Interests)에 부합된다고 보아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표 7> RDP 적격국가

<Table 7> RDP Qualifying Country

DFARS 252.225-7001 'Qualifying country' means a country with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or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the U.S. in which both countries agree to remove barriers to purchases of supplies produced in the other country or services performed by sources of the other country. '적격국가'란 미국과 RDP 양해각서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양국은 상대국의 공급원이 생산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에서의 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한다.

<표 7>의 미국 국방조달규정보충서(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이하 DFARS)¹⁷⁾에서는 RDP 체결국을 적격국가로 규정하고 이 국

17) 미국 국방부 및 산하 기관(육해공군)에 적용되는 국방조달규정보충서로서 미국 정부 연방조달

가들에 차별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AA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RDP 체결국에 대한 BAA의 적용 면제를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RDP를 체결한 국가의 방산업체에 미국의 방산업체와 동일한 자격을 직접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BAA 면제조항인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근거로 차별적인 비용의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 부분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RDP를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의 안보 및 군사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2024년 6월 기준 28개국이 RDP를 체결하여 적격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체결국과의 협의에 따라 상호호혜적으로 BAA 면제를 포함하여 국제수지 프로그램(Balance of Payments Program) 및 관세 등 일부 세제에 대한 면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표 8> 적격국가에 대한 BAA 등의 면제

<Table 8> Exemption of BAA, etc. for Qualifying Countries

DFARS 225.103 Public interest exceptions for certain countries are in DFARS 225.872(Contracting with qualifying country sources). 공공으로 인한 예외의 적용은 DFARS 225.872에 명시된 적격국가로서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해당된다. DFARS 225.872-1 (a) As a result of MOU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Department of Defense has determined it in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to apply restrictions of the Buy American statute or the Balance of Payments Program to the acquisition of qualifying country end products from the following qualifying countries : 28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양해각서 및 협정서 체결로 국방부는 적격국가(호주 등 28개국)로부터 최종제품을 획득하는데 BAA 또는 국제수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DFARS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적격국가로부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최종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BAA 또는 국제수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RDP를 체결한 적격국가에 BAA, 국제수지 프로그램, 관세 등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들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RDP 체결국에 적격국가 지위를 부여하고 BAA 면제, 관세 면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가격에서 불공정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A 법률 조항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은 미국 본토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전체 구성품 중에서 미국산 원가가 55%를 넘어야 한다. 55%를 넘지 않으면 수입품으로 판단하여 수출원가에 50%의 추가적인 금액을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2024년 65%, 2029년에는 75%까지 각각 상향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RDP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이러한 적용을 면제하므로 RDP를 체결하지 않고 가격경쟁의 불리함을 극복하여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9> 미국 연방조달규정의 미국산 인정비율

<Table 9> U.S.-Made Recognition Ratio of the U.S. FAR

FAR 25.101(a)(2)(i) Except for an end product that consists wholly or predominantly of iron or steel or a combination of both, the cost of domestic components shall exceed 60 % of the cost of all the components, except that the percentage will be 65 % for items delivered in calendar years 2024 through 2028 and 75 % for items delivered starting in calendar year 2029. 전체나 대부분이 철이나 강철 또는 이들 조합으로 생산된 완성품을 제외하고 국내 부품 비용이 전체 비용의 60%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율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납품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65%, 2029년부터 납품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75%가 적용될 것이다.

다만, BAA에서 미국산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산시설이므로 미국 본토에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무관하게 미국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간주되어 RDP 체결과 무관하게 BA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RDP 구성

RDP 협정서는 기본협정서와 그에 속하는 부속서(Annex)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협정서에는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범위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기본협정서는 전문(Preamble), 본문(Body) 및 서명(Signatures)의 정형적인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전문에는 체결 목적 등 상호호혜 원칙에 기초하여 RDP 체결에 따른 미국과 체결국 간의 기대사항을 기술한다. 본문은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방조달에서의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적용범위, 방산교역 불균형 해소, 조달 절차, 관세 및 세제의 면제, 상호방문 원칙 및 절차, 효력발효일 및 유효기간, 해지 등의 내용이 본문에 포함된다. 서명에는 조약체결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는데, 미국과 체결국 국방부장관이 조약 체결 당사자로서 서명한다. 기본협정서는 국가별로 상당 부분 유사하나, 합의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2010년에 룩셈부르크가 RDP를 체결한 이후에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RDP를 체결한 8개국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7개국은 RDP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기본협정서에 비해 부속서에는 RDP 이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통상 정형화된 형식 없이 미국과 체결국과의 세부적인 협력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부속서는 RDP를 체결하면서 함께 협정서의 일부로서 포함되거나, 또는 RDP를 체결한 이후 구체적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추가하기도 한다.

<표 10> RDP 기본협정서 구성¹⁸⁾

<Table 10> RDP Agreement Format

<p>Preamble(전문) : 상호호혜 원칙하에 RDP 체결에 따른 양국의 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목적 : 표준화, 합리화, 상호운용성, 상호군수지원의 촉진 - 협정 당사자의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 (2) 각 국가의 방위사업 역량의 강화 (3) 국방기술교류 촉진 (4) 국방자원에 대한 합리적 사용, 비용 대비 효과 촉진 (5) 서로 유익한 범위 내에서 법과 규정, 국제적 책무에 부합되도록 장벽 제거 <p>Body(본문) : 10개 기본항목으로 구성</p> <p>제1장 Applicability(적용범위) : 적용되는 국방조달 범위 및 제외되는 예외조항</p> <p>제2장 Principles(원칙) : 상호조달의 장벽 제거, 상대국 방산업체 대우, 조달정보 제공 등에 관한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조달에 있어 양국의 책임있는 기관은 공정한 상호 경쟁을 허용 - 국방조달 시 무역의 장벽을 제거 - 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정, 정책 및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교환 - 소요 및 계획된 구매 정보의 제공 - 상대국 방산업체의 제안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제공 - 기술정보, 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 - 모순되는 언질을 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회피 - 다른 국가의 회사에 수주되는 국방조달 금액에 관한 통계 제공 <p>제3장 Offset(절충교역) :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p>

18) 전세훈, 김민주, 최규상, 정재영, & 신동협. (2020). 「한미 상호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안보경영연구원.

제4장 Customs and Duties(조달에 대한 관세 및 제세의 면제).
 제5장 Procedures(절차) : 양국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시간, 통보사항
 제6장. Industry Participation(방산업체 참여)
 제7장. Security(보안) : 제공되는 군사정보 보안에 대하여 일반협정 조항을 인정
 제8장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합의이행을 위한 책임기관, 담당자)
 제9장. Implementing Arrangements(협정의 이행)
 제10장. Duration and Termination(효력의 유효기간 및 종결).
 Signatures of Both Parties: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서명

6. RDP 한계

RDP 체결로 주어지는 BAA 적용 면제 등의 혜택이 체결국에게 무작정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RDP는 철저하게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즉, RDP는 미국과의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간의 협약이므로 RDP 체결국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반대의 급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RDP 체결로 인하여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미국에는 BAA 외에도 Jones Act, 원가회계기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비밀취급인가 규정,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¹⁹⁾ 등 외국산 구매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규 및 제도가 있으며 RDP 체결과는 무관하게 미국에서 직접 생산되거나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미국 방산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RDP를 체결하면 미국의 방산시장

19)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ertification of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 미국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능력을 평가하여 3단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 국방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CMMC를 획득해야 한다. 2026년부터 미국 국방부와 계약하는 모든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에서 미국의 방산업체와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RDP로 인한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DFARS에 의하면 적격국가는 BAA 예외로서 차별적인 비용 부과 면제, 국제수지 프로그램 적용의 제외,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상호호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받는 것이지 모든 면에서 미국 방산업체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 프로그램은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체결한 건설계약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국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RDP 체결국 대부분은 건설 및 건설계약을 RDP 협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설 또는 건설계약의 경우 인프라 및 시설물의 건설,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방산협력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국가별 법률 및 제도의 차이가 커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의 RDP 원칙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RDP 체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BAA 면제와 관세 등과 같은 세제 혜택 등으로 제한된다.

넷째, RDP 체결국을 적격국가로 규정하여 BAA 적용을 면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을 무제한으로 확대가능한 것은 아니다. RDP에 따라 자국산 구매법에 의한 불평등한 차별을 면제하므로 최소한 가격 면에서는 차별없이 미국시장에 제한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RDP 체결국에 개방되는 국방조달의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BAA 면제는 극히 제한되고 통제된 혜택으로서 미국 국무부에 의하면 BAA 면제는 2008년 이후부터 감소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산우선구매를 강조하고 있어 BAA 면제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앞서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RDP를 조속히 체결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DP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DP에 관한 선행연구 중 신현인 등(1999)은 국내 방산시장이 장기적으로 개방된다면 방산업체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방산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방산 경쟁력을 고려하여 서서히 시간을 두고 RDP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⁰⁾ 유규열(2008)은 국내 방산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어 RDP 체결은 시기상조이며,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²¹⁾ 홍영식 등(2018)은 RDP와 FTA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방산수출에 긍정적이며 국내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국내의 방산업체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괄목할 만한 방산수출의 성장세,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 등을 고려할 때, RDP 체결이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²²⁾ 전세훈 등(2020)은 RDP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RDP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단점을 회피하면 기존의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반드시 RDP를 체결해야 한다면, 국내 방산업체 및 방산시장에 대한 보호대책과 RDP 체결을 통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유형

20) 신현인. (1997). 「한미 상호조달 양해각서 체결의 타당성 연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21) 유규열. (2008).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따른 한·미 상호국방조달 MOU 추진방향」. (한국 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3(2), 1-24).

22) 홍영식, 김만기, & 손영환. (2018).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의 예상 영향 연구」. (아태연구, 25(4), 5-30).

곤(2022)은 RDP를 체결 시에 미국의 방산업체와 국내 방산업체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이 협정서 조항에 포함된다면 국내 방위산업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절충교역 제외 등 방위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²⁴⁾ 김만기 등(2022)은 RDP를 체결하면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기존 제도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적절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²⁵⁾ 심순형 등(2023)은 RDP를 체결하는 경우 미국 방산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⁶⁾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RDP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RDP의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RDP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정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협정서 조문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여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28개 RDP 체결국 전체 협정서를 대상으로 법적 해석이나 영향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홍영식(2018), 김만기(2022)는 이러한 시도를 하였으나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홍영식은 28개국 중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만기는 일본, 호주, 네덜란드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3개국 모두 세계 방산시장

23) 전세훈, 신동협, 정재영, 최규상, & 김민주. (2020). 「한미 상호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안보경영연구원.

24) 유형근. (2022). 「한미간 RDP-MOU(방산 FTA) 체결, 득과 실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국방기술포디움, 7(-), 26-31).

25) 김만기, 김영주, 권영민 & 배선미. (2022).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경제성 및 산업 영향성 분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6) 심순형, & 김미정. (2023). 「국방상호조달협정이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의 수출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세계 10위인 한국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를 비교하여 협정문 조문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방위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RDP를 체결한 주요국의 방산수출입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RDP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RDP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RDP와 방산수출입 실적 데이터 연관성

국가의 방위산업은 특정한 일부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²⁷⁾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요인으로는 기술력 및 혁신성(기술 수준, 연구개발 투자, 특허 보유 등),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생산 시스템 효율성, 품질 표준 및 인증, 납기, 불량률 등), 비용의 효율성(자본비용, 노동비용, 원자재 비용 등), 수출 지향적 전략(글로벌 마케팅, 해외 영업 네트워크, 국제협력 등) 등이 있다. 반면,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치적 안정성 및 국제관계(국가 간 관계, 정치적 위험, 군사적 충돌 여부, 군사동맹 등), 국제규제 및 국제협약(국제규제 준수, 국제협약 참여, 국제무역협정 등), 경제적 환경(대상국가의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통화가치 등), 안보 및 군사 요인(군사위협 수준, 안보정책, 군비 경쟁 상황 등), 환율 변동성(통화 변동률, 환율 안정성

27) 유진우. (2023). 「한국 무기·총포탄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수출성과 결정요인 연구」. 광운대학교.

등) 등 매우 다양하다. 방위사업은 이처럼 수많은 대내외 변수에 의하여 영향 받으므로 단순히 RDP 체결만으로 한 국가의 방위산업에 직접적이고 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RDP를 체결한 28개국에 대하여 이러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RDP 체결로 인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SIPRI의 세계 수출입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RDP 체결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RDP 체결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유용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과의 RDP 체결 전후에 방산 수출입 실적에 뚜렷한 변화가 RDP를 체결한 다수의 국가에서 관찰되었다면 RDP 체결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RDP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앞으로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하고 극복해야 할 국가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하여 SIPRI의 2019~2023년 세계 방산수출 10위인 한국의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2%) 이상의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DP를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2% 이상인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다. 이에 더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 이상인 네덜란드(1.22%) 및 튀르키예(1.55%)도 추가하여 총 8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RDP 협정서 분석에서는 RDP를 체결한 모든 2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출입 실적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을 8개국으로 제한한 이유는 방산수출 점유율이 거의 없거나 통계상 무의미한 수준에 불과한 국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체적인 데이터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RDP를 체결한 28개국 중에서 분석대상 8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은 모두 1% 미만으로서 이들의 총합은 2.0%에 불과하다.

<표 11> RDP 체결국 중 분석대상 8개국²⁸⁾

<Table 11> 8 countries to be analyzed among RDP Countries

구분	체결국	방산수출 점유율	구분	체결국	방산수출 점유율	구분	체결국	방산수출 점유율
1	캐나다	0.65 %	11	덴마크	0.10 %	21	룩셈부르크	0.00 %
2	스위스	0.55 %	12	튀르키예	1.55 %	22	폴란드	0.65 %
3	영국	3.67 %	13	스페인	2.73 %	23	체코	0.22 %
4	노르웨이	0.36 %	14	그리스	0.01 %	24	슬로베니아	0.03 %
5	프랑스	10.92 %	15	스웨덴	0.85 %	25	일본	0.01 %
6	네덜란드	1.22 %	16	이스라엘	2.45 %	26	에스토니아	0.02 %
7	이탈리아	4.29 %	17	이집트	0.07 %	27	라트비아	0.01 %
8	독일	5.66 %	18	오스트리아	0.02 %	28	리투아니아	0.03 %
9	포르투갈	0.05 %	19	핀란드	0.09 %			
10	벨기에	0.26 %	20	호주	0.61 %			

2. RDP 체결국의 방산수출입 실적 데이터

정확한 RDP 체결국의 수출입 분석을 위하여 SIPRI의 2023년 세계 방산수출입 실적 데이터(Arms Transfer D/B)를 사용하였으며, RDP 체결 전과 이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RDP 체결 5년 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

28)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2019~2023)”, 2024, (SIPRI, <https://armstransfers.sipri.org/ArmsTransfer/CSVResult>, 검색일: 2024.06.10.)

다. 분석기간을 RDP 체결 5년 전부터 2022년까지로 정한 이유는 RDP 체결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장기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RDP 체결 5년 이전 데이터를 포함함으로써 RDP 체결 이전의 추세와 이후의 추세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함이다.

3. 분석내용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입 실적은 다음과 같이 분석대상 8개 국가의 세가지 수출입 실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 ①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RDP 체결 전 5년~2022년)
- ②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RDP 체결 전 5년~2022년)
- ③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RDP 체결 전 5년~2022년)

위의 ①·②번 분석을 통해 RDP를 체결한 이후에 세계 각국으로의 방산수출 또는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에 대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추세적으로 확인한다. ③번 분석은 국내에서 일부 우려하는 바와 같이 RDP를 체결한 이후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방산시장의 잠식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RDP 체결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 방산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를 방산시장이 잠식되었다는 간접적인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RDP 협정문 분석

제1절 28개 RDP 체결국 협정서 비교 분석

본 논문은 제2장을 통해 미국 방산시장에서의 RDP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RDP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혼재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본 장에서는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를 주요 항목별로 비교함으로써 국가별로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하였는지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8개 국가별 RDP 협정서는 미국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²⁹⁾으로 하되, 부속서는 제외하고 협정서 또는 양해각서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속서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으며, 그 내용도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제한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언제, 어떠한 내용의 부속서를 체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절에서는 협정서 조문을 주요 항목별에 상호 비교하여 유사성을 찾아내고 함의가 무엇이며 방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미국의 RDP 제도 및 협정서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1. 체결목적

미국은 자유주의 위협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RDP 체결국과 방위산업에서의 차별적인 불공정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

29) “International Contracting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nd Acquisition Policy Memoranda of Understanding,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U.S. Defense Pricing & Contracting ASD(A), <https://www.acq.osd.mil/asda/dpc/cp/ic/reciprocal-procurement-mou.html>, 검색일: 2024.5.12.)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RDP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희토류,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국방의 핵심분야에 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RDP를 체결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연방관보 : 한국과의 RDP 협상 추진

<Fig. 3> U.S. Federal Register: RDP Negotiations with Korea

이처럼 미국은 RDP 체결을 통해 국방조달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DP에 관한 미국 연방관보³⁰⁾에서 명확히 하

30) "Negotiation of a RDP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2024, (Federal Register,

고 있다.

<표 12> RDP 체결목적³¹⁾

<Table 12> Purpose of RDP

<p>Rationalization is any action tha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allied forces through more efficient or effective use of defense resources committed to the alliance. 합리화란 동맹국에 위탁된 국방자원을 더욱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동맹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이다.</p> <p>Standardiz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the DoD achieves the closest practicable cooperation among the Services and DoD agencies for the most efficient use of research & development, and production resources. 표준화란 연구개발과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방부가 국방부 관련기관 및 각 군과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다. Within NATO, standardization is the activity of establishing, about actual or potential problems, provision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 NATO 회원국 내에서 표준화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환경하에서 가장 질서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서 상호 간에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확립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 Operational standardization enables U.S. forces to operate as effectively, efficiently, and safely as possible with the forces of allied, coalition, multinational, and/or friendly nations. 작전적 표준화를 통하여 미군은 동맹국과 연합군, 다국적 및/또는 우호국 군대와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p> <p>(2) Materiel standardization perpetuates harmonization of defense materiel capability needs, laying the groundwork for reciprocal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production, and procurement. 장비의 표준화는 무기체계 요구성능의 조화를 지속시킨다. 특히,</p>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2/23/2024-03705/negotiation-of-a-reciprocal-defense-procurement-agreement-with-the-republic-of-korea>, 검색일: 2024.06.18.)

31)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Instruction: Rationalization, Standarization, And Interoperability Activities”, (2019), (U.S. Joint Chiefs Of Staff, CJCSI 2700.01H, A-1~A-2)

연구개발 및 시험, 생산, 조달 분야의 상호 국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Interoperability is the ability to act together coherentl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achieve tactical, operational, and strategic objectives. Within NATO, interoperability is the ability to act together coherentl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achieve allied tactical, operational, and strategic objectives. 상호 운용성은 전술적 목표 및 작전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NATO 내에서 상호운용성은 연합 전술, 작전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이 우방국과 RDP를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은 NATO의 회원국 상호간의 국방협력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NATO는 1949년에 구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을 포함한 12개국을 중심으로 창설되어 1950년대 후반부터 합리화, 표준화,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국방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은 NATO의 합동 군사협력과 맞물려 집단적인 연합작전을 실시하는 경우 군사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로 보았다.³²⁾ 즉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으로서 구성된 NATO가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국방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산협력에 있어서 합리화, 표준화, 상호운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RDP 체결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화, 표준화, 상호운용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NATO의 국방협력 추진 방향과 일치하며, 이는 미국이 RDP를 경제적인 수단보다는 안보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RDP의 세가지 기본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화(Rationalization)는 서로 상이한 국가들 간에 국

32) 박성완. (2019). 「EU 방위조달지침의 개관」. (선진국방연구, 2(3), 53-70).

방물자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군수품에 대한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수품 및 장비에 대한 중복구매를 방지함으로써 RDP 체결국의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표준화(Standardization)는 다양한 군수품 및 장비가 서로 호환되도록 표준을 세우는 것으로서 각국의 보유 장비들에 대하여 같은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장비 간 호환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한다. 표준화는 K-방산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왜냐하면 RDP는 방산협력에 합의한 다수의 체결국 상호간의 표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다양한 군수품과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방국간에 제약이 없이 상호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군수품을 상호 호환하여 운용할 수 있으면, 연합작전 등과 같은 다양한 군사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합동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RDP와 자유무역협정(FTA)

미국과 상대국과의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방산시장을 상대국에 개방함으로써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국내법 및 관세 등 무역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관점으로 일부에서는 RDP를 국방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RDP를 체결하면 모든 방산 분야를 미국에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국내 방산시장의 잠식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P는 안보정책의 일환으로서 방산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FTA는 자유로운 무역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우선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첫째, RDP는 국방 분야에서 미국 및 우방국 또는 동맹국과 서로의 방산시장에 대한 규제 등의 장벽을 낮추고 방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무기체계의 표준화, 합리화 및 상호운용성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즉 RDP는 미국 국방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증진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비해 FTA는 경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업 및 투자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만, RDP는 국방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RDP는 국방조달을 포함한 방산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FTA와는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

<표 13> RDP와 FTA 비교

<Table 13> Comparison RDP against FTA

구 분	RDP	FTA
목적	국방조달에 있어 상호 방산교역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한 경쟁을 허용	상호간의 상품 및 용역의 교역에 대한 배타적인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
적용 방식	상호간의 국내법 및 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국산우선구매법 등의 적용을 면제	협정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체결국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등 무역의 장벽을 철폐

둘째, RDP를 체결하면 미국과의 방산협력이 활성화되고 미국의 BAA 적용이

일부 면제되면서 방산수출이 확대될 여지는 있으나, FTA와는 달리 전방위적인 시장개방은 제한될 것이다. 미국은 BAA 외에도 ITAR, Jones Act 등과 같은 다양한 법규나 해외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철저히 해외 방산수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방산시장은 정부의 엄격한 제재 및 주도권 하에 작고 통제된 연방조달시장을 대상으로 28개 RDP 체결국이 경쟁하고 있어 RDP 체결만으로 개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RDP를 체결하는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 WTO의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또는 FTA는 체결국 상호간의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체계와 국방물자 등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조달시장을 개방하려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즉, RDP는 WTO 정부조달협정이나 한미 FTA와는 독립된 별도의 대상과 범위를 가진 개별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 또는 우방국 RDP를 체결하여 서로에게 자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3. RDP의 역사적·정책적 배경

미국이 1963년 이후 28개국과 RDP를 유지해 온 역사적, 정책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RDP 성격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내 방위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RDP는 역사적으로 냉전시기에 공산진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NATO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1949년에 미국 및 캐나다 등의 12개국은 NATO를 창설하여 국방 및 방산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언지 못하였고, 1950년대 후반 회원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군사작전 소요에 기반하여 상호 합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NATO는 합리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당시 대부분의 NATO 국가들이 미국과의 극심한 방산교역 불균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NATO 국가들의 불만을 상쇄하고 정치적, 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 후반 NATO 12개국과 RDP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교역 비율은 8 : 1로 미국이 월등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RDP의 상호호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NATO 회원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방산교역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은 1991년 보고서³³⁾에서 RDP 체결국에 대하여 미국은 관세 면제 등 RDP에 합의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RDP를 체결한 이후에도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RDP가 유럽의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듬해 GAO의 또 다른 의회보고서³⁴⁾에서는 RDP가 미국 및 유럽 방산업체에 상호호혜적으로 공정한 혜택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RDP 체결국들은 RDP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방산업체는 향후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RDP 체결국에 대하여 이의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 RDP 체결 이후에도 유럽에서 공정하게 상호호혜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DP

33) GAO. (1991). 「European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U.S. Defense Trade and Cooperation」. (GAO/NSIAD-91-167, 4(-), 36-40).

34) GAO. (1992). 「International Procurement: NATO Allies' Implementation of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s」. (GAO/NSIAD-92-126).

이행을 권고하고 감독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처럼 RDP는 미·소 냉전시기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한 우방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 증진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방산교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RDP 이행 과정에서 불리함도 감수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RDP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후 양해각서보다 협정서가 선호되었고, RDP 협정서에는 비구속적인 용어에 비해 구속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DP는 우방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 정책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군수품 및 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승인된 제도를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외 정책 및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안보협력은 안보 지원 정책의 일부로서 우방국과의 공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직접 수행되거나 관리하는 모든 대외활동을 포괄³⁵⁾하며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한다. 미국 국방부가 우방국과 RDP를 체결하여 방산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무기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등 방산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합동군사작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안보협력 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RD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35) U.S. DoD, (2018), 「DOD Policy &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Security Cooperation」, Directive 5132.03.

4. 부속서

일반적으로 RDP 기본협정서에는 체결 상대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이나 절차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은 RDP 체결 이후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부속서 형태로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속서에는 기본협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영국 항공방산협회 수출본부장은 RDP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가치(Biggest & More Direct Value)는 부속서에 있다고 한다.³⁶⁾ 영국은 미국과 품질보증 및 계약감사에 관한 2개의 부속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국가가 요청하면 상대국이 대신하여 품질보증 또는 계약에 관한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즉, 영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대신하여 영국 정부를 대신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사례에서 RDP 체결로 인하여 영향이 실제 확인되는 부분은 계약감사 또는 품질보증을 관련된 부속서라는 것이다.

RDP 부속서를 체결한 국가들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국이며, 11개국은 아직까지도 부속서 없이 기본협정서만을 유지하고 있다. RDP를 체결했던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평균 2~5개의 부속서를 체결하였고, 네덜란드는 무려 9개에 이르는 부속서를 체결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Services), 계약감사(Contract Audit Services), RDP 이행 절차(Implementing Procedures), 조달절차(Purchase Procedures), 공통장비 군수지원(Logistics Support of Common Equipment) 등의 부속서를 체결하였으며, 네덜란드·이스라엘·이집트는 과학자 및 공학자 교류에 관한 부속서(Scientist & Engineer Exchange Program)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상호품질보증 표준화(Reciprocal Qualification Standardization Agreement),

36) Brinley. (2023). 「Letter of UK Aerospace, Defense and Security Industries」.

상호 수락시험(Test And Evaluation Mutual Acceptance) 부속서를, 네덜란드는 정보보호(Information Protection), 공급안보협정(Security Of Supply)³⁷⁾ 등에 관한 부속서를 체결하였다. 튀르키예, 그리스, 노르웨이와 같이 전차, 미사일, 장갑차 등 중점 협력대상 분야를 명시하거나 또는 포르투갈처럼 상호협력 제한 분야를 부속서로 추가한 경우도 있다.

<표 14> RDP 국가들의 부속서 체결 현황

<Table 14> Annex Signing Status of the RDP Countries

구 분		RDP 부속서 체결현황 및 체결연도
체결 (17개국)	영 국	ANNEX I : Reciproc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Services(1975년) ANNEX II : Reciprocal Audit Services(1975년)
	노르웨이	ANNEX I : Implementing Procedures(1978년) ANNEX II : Indicative Product List(1978년) ANNEX III : Reciprocal Quality Assurance Services(1986년) ANNEX IV : Purchase Procedures(1991년)
	프 랑 스	ANNEX I : Implementing Procedures(1980년) ANNEX II : Defense Contract Audit Services(1990년) ANNEX III : Principles Governing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1990년) ANNEX IV : Principles Governing Reciprocal Purchases Of Defense Equipment(1990년)
	네덜란드	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78년) ANNEX II : Principles Governing Logistics Support Of Common Equipment(1978년) ANNEX III : Terms Of References(1978년) ANNEX IV : Principles Governing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1982년) ANNEX V : Protection Of Information(1982년)

37) 공급안보협정(SOSA) : 미국의 국방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방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한국(방위사업청)은 2023년 미국의 16번째 체결국이 되었다. 주요 무기체계 부품 등 방산물자에 대하여 상대국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p>ANNEX VI: Defense Contract Audit Services Principles (1991년)</p> <p>ANNEX VII: Purchase Procedures(1990년)</p> <p>ANNEX VIII: Principles Governing a Scientist & Engineer Exchange Program(1993년)</p> <p>ANNEX IX: Principles Governing Security Of Supply (2005년)</p>
이탈리아	ANNEX I : Quality Assurance Services(2009년)
독 일	<p>ANNEX I (1979년)</p> <p>ANNEX II: Principles Governing R & D(1979년)</p> <p>ANNEX III: Principles Governing Logistics Support(1979년)</p> <p>ANNEX IV: Terms Of Reference(1980년)</p> <p>ANNEX V: Principles Governing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1983년)</p> <p>ANNEX VI: Defense Contract Audit Services Principles (1982년)</p> <p>ANNEX VII: Principles Governing Procurement Procedures (1991년)</p>
포르투갈	<p>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80년)</p> <p>ANNEX II: Principles Governing Common Equipment Logistics Support(1980년)</p> <p>ANNEX III: Terms Of Reference(1980년)</p>
벨 기 에	<p>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83년)</p> <p>ANNEX II: Terms Of Reference(1983년)</p> <p>ANNEX III: Principles Governing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1983년)</p>
덴 마 크	<p>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80년)</p> <p>ANNEX II: Terms Of References(1980년)</p> <p>ANNEX III: Principles Governing Logistics Support Of Common Equipment(1980년)</p> <p>ANNEX IV: Reciprocal Quality Assurance Services(1985년)</p> <p>ANNEX V: Purchase Procedures(1994년)</p>
튀르키예	<p>ANNEX I : (1980년)</p> <p>ANNEX II: Reciprocal Quality Assurance Services(2001년)</p>

	스 페 인	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87년) ANNEX II: Reciproc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Services(2014년)
	그 리 스	ANNEX A: Cooperation Programs(1992년) ANNEX B: Counting Procedures(1992년) ANNEX C: Reciprocal Quality Assurance Services(1992년)
	스 웨 덴	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Mutual Cooperation (1990년) ANNEX II: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Services (1990년)
	이스라엘	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87년) ANNEX II: Research & Development, Scientist & Engineer Exchange, Procurement & Logistics Support of Defense Equipment(1988년) ANNEX III: Mutual Acceptance Of Test And Evaluation (1988년) ANNEX IV: Quality Assurance Services(2008년) ANNEX V: Standardization Agreement for Reciprocal Qualification(1993년)
	이 집 트	ANNEX I : Principles Governing Implementation(1988년) ANNEX II: Exchange Scientists And Engineers(1991년)
	호 주	ANNEX I : Reciproc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Services(1995년)
	일 본	ANNEX I : Reciproc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Services(2023년)
미체결 (11개국)	캐나다(1963), 스위스(1975), 핀란드(1991), 오스트리아(1991), 룩셈부르크(2010), 체코(2012), 폴란드(2011), 에스토니아(2016), 슬로베니아(2016), 라트비아(2017), 리투아니아(2021)	

하지만 미국 GAO가 RDP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1991년 이후 부속서 체결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호주(1995) 및 일본(2023)이 각 1건씩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국은 아직까지도 부속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은 폴란드(14위), 캐나다(15위), 스위스(17위)를 제외하면 세계 방산수출 실적 25위 미만인

국가들이다. 부속서는 RDP와 함께 체결하거나, 또는 RDP를 체결한 이후에 별도로 추가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속서를 체결한 17개국 중 8개국은 함께 체결하였다. 9개국은 이후에 체결하였는데, 기본협정서를 체결하여 미국과의 방산협력 틀을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정례회의 등을 통하여 사안별로 논의하고 이를 부속서로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속서는 일단 체결되면 효력 면에서 기본협정서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기본협정서에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기본협정서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기본협정서의 합의내용을 벗어난 부속서의 체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협정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RDP 기본협정서를 우선 개정하고 이후에 부속서를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부속서를 RDP 협정의 일부로 간주하고는 있으나, 기본협정서에는 양자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기본협정서 조항을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속서의 수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다.

<표 15> RDP 부속서의 효력

<Table 15> Effect of the RDP Annex

구분		RDP 협정서
A그룹 (6개국)	프랑스 (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nexes negotiated by the responsible services and approv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 authorities will be part of this agreement. 권한있는 소요군이 협상하고 해당 정부기관이 승인한 부속서는 본 RDP 협정서의 일부에 해당된다. In the event conflicts arise between any aspect of this annex and the laws of either participating government, the laws shall prevail. 부속서의 어떤 부분이 양국 어느 정부의 법률과 충돌되는 경우, 그 법률이 우선한다.

독일 (5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tail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set forth herein will be set out in annexes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여기에 명시된 원칙의 이행에 관련 세부사항은 본 양해각서의 부속서에 명시될 것이다.
이탈리아 (6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itional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nnexes shall be considered an integral part of this MOU.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해 양해각서에 추가적인 부속서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는 양해각서의 필수 부분으로 간주된다.
영국 (7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MOU by written determin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 selection of this MOU and any of its Annexes, the language in the MOU will govern 당사자의 서면 결정에 의해 본 양해각서에 부속서를 추가할 수 있다. 양해각서와 부속서가 충돌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스페인 (9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Agreement, including its Annexes, will enter into force and remain in force. Supplementary protocols which may be negotiated by the responsible officials and approv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 authorities will be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and made an integral part thereof. 본 협정은 부속서를 포함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계속 유효할 것이다. 권한있는 공무원이 협상하고 적절한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보충문서는 본 협정서에 포함하여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될 것이다.
이스라엘 (1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es are an integral part of this MOU. Further annexes to this MOU may be negotiated by the responsible officers and approv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r each Government and will be treated as an integral part hereof. 부속서는 RDP 양해각서의 구성요소이다. RDP 양해각서에 부속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정 책임자가 협상하고 관련기관 또는 당사국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RDP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B그룹	8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Agreement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n Article of this Agreement and any of its Annexes, the language in the Agreement shall prevail.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본 RDP 협정에 부속서가 추가될 수 있다. RDP 협정서와 부속서가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RDP 협정서가 우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베니아(2016), 에스토니아(2016), 라트비아(2017) •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Agreement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n Article of this Agreement and any of its Annexes, the language in the Agreement shall prevail. Such annexes shall be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and considered an integral part thereof. 당사자 서면합의에 의해 본 RDP 협정에 부속서가 추가될 수 있다. RDP 협정서와 부속서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RDP 협정서의 효력을 우선한다. 단, 부속서는 RDP 협정서에 포함하여 그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2012), 리투아니아(2021) •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MOU by written determin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 Section of this MOU and any or its Annexes. the language in the MOU will gov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2016) •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MOU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nnexes shall be considered an integral part of this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룩셈부르크(2010), 폴란드(2011)
C그룹	3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Agreement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n Article of this Agreement and any of its Annexes, the language in the Agreement shall prevail. Such annexes shall be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and considered an integral part thereof.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본 RDP 협정에 부속서가 추가될 수 있다. RDP 협정서와 부속서가 충

	<p>돌하는 경우에는 RDP 협정서를 우선한다. 부속서는 RDP 협정서에 통합되며 그 일부분으로 간주된다.</p> <p>※ 핀란드(1991)</p> <p>• 관련내용 없음: 호주(1995), 오스트리아(1991)</p>
--	--

5. 유효기간 및 종결절차

일반적으로 RDP 기본협정서에는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절차 등은 부속서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모든 RDP 기본협정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기간이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나머지 27개국은 5년 또는 10년의 RDP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표 16> RDP의 유효기간 및 연장방식

<Table 16> RDP Expiration and Extension Type

구 분	RDP 체결국 협정서별 세부내용
유형 #1 (1개국)	• 유효기간 없음(캐나다)
유형 #2 (15개국)	• 5년,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종결의사를 제시하지 않는 한 5년 자동연장(스위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등)
유형 #3 (9개국)	• 10년, 유효기간 도래하면 합의에 따라 추가로 10년을 연장(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형 #4 (3개국)	• 10년,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종결의사를 제시하지 않는 한 10년 자동연장(네델란드, 스웨덴, 호주)

RDP는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협정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국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같은 기간 동안 자동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하고 있다. RDP 체결국의 협정서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기간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6개국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5개국은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종결의사를 제시하지 않는 한 5년을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12개국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연장 보다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내 방산시장 잠식 등 RDP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자유로운 종결이 가능하다. 이처럼 RDP 협정은 체결한 이후에 문제점들이 식별된다면 언제라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종결이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 28개국 중 아직까지 종결한 국가는 없다. RDP 체결로 인하여 미국에 의해 방산시장이 잠식되었다면 28개국이 모두 지금까지 RDP 협정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RDP 체결국 중 13개국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0.1% 이하로서 방산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이지만, RDP 협정을 종결하지 않고 미국과 방산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RDP 체결 시 국내 방산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로 비교적 짧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도래한 2021년에는 RDP 협력범위 및 절차 등 내용의 변경없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형식도 양해각서에서 Agreement로 변경하였다. RDP를 처음 체결하였을 때의 일본 내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RDP를 종결하는 데에는 상대국의 필요적 승낙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결절차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지하면 언제든지 종결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17> RDP 종결절차

<Table 17> RDP Closing Procedure

구 분	RDP 체결국 협정서별 세부내용
유형 #1 (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전 통보(구체적인 통보수단 미규정) (프랑스) Any withdrawal intention must be notified to the other Government <u>six months in advance</u> of its effective date. (일본)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e present agreement at all time by giving to the other Government <u>at least six months</u>. (호주)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upon <u>six months in advance</u>. (그리스) Terminate by either Party on <u>six month's notice</u>.
유형 #2 (23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이스라엘 등 11개국) <u>Written notification</u> of its intention will be given to the other Government <u>six months in advance</u> of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폴란드 등 9개국) This Agreement(MOU)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upon <u>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u> to the other Party. (핀란드)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upon <u>six months in advance prior written notice</u> to the other Party. (영국) Either Participant may withdraw from this MOU upon giving <u>180 days written notice</u> to the other Participant of its intent to withdraw. (캐나다) Either Participant may withdraw upon <u>180 days written notification</u> to the other Participant.
유형 #3 (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튀르키예)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Agreement upon <u>30 days notice in writing</u>.

즉,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에 통지만 하면 종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반드시 요구되는 등의 절차적인 요건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통보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프랑스 등 4개국과 같이 통보수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영국은 특이하게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종결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상호동의에 의해 종결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협정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 RDP 종결을 위해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계속하여 인정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며, 임의로 RDP 종결함으로 인한 강제적인 불이익은 없다.

6. 협력범위

RDP 체결 협상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방산협력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협력범위에 따라 RDP 체결로 인한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범주까지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RDP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체결국 사례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이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부분은 국방물자(Materials)에 제한하지 않고 용역(Services)까지도 포함하였다. 또한, 단순히 조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양산 및 군수지원 등 포괄적인 범위까지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A그룹 6개국이 가장 포괄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B그룹 8개국은 연구개발, 군수품 및 용역의 조달로 협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연구개발, 군수품 및 용역 구매를 협력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제외하면 1991년 이후 RDP를 체결한 국가들의 협력범위가 정형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도 미국과의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연구개발, 양산,

군수지원 등 범위를 확대하여 RDP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8> RDP 협력범위

<Table 18> RDP Cooperation Scope

구분		RDP 협정서
A 그 룹	프랑스 (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MOU covers procurements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French Ministry of Defense for defense equipment, related spare parts, support equipment and services and corresponding supplies, research and development. 본 MOU는 국방물자와 관련된 수리부속과 지원장비, 용역, 보급품 및 연구개발에 관한 미국과 프랑스 국방부간의 조달에 대해 다룬다.
	독일 (5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MOU is intended to cover areas in which, in the view of both parties to the Agreement, bilateral cooperation could be achieved in conventional defense equi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procurement and logistic support. 본 MOU는 당사국 각각의 관점에서 재래식 국방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조달, 군수지원에 관하여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6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MOU covers acquisition of defense capability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Mo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urement of supplies including defense articles, procurement of services including defense services. 본 MOU는 미국과 이탈리아 국방부가 연구개발, 물자 및 용역의 국방물품에 관한 조달을 다룬다.
	영국 (7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MOU covers the acquisition of defense capability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K MoD and their designat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through: Research & development, procurements of supplies, procurements of services and provis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procurement by the other Participant. 본 MOU는 연구개발, 보급품 및 용역의 조달, 상대국의 조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하여 미국 및 영국 국방부와 지정된 정부 대표의 방위력 획득을 포함한다.

	스페인 (9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 increase their respective defense capabilities through more effici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procurement and logistic support of defense equipment. 국방장비 연구개발, 생산, 조달 및 군수지원 등에서 효율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각국의 방위력 증대
	이스라엘 (1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MOU and its Annexes set out the guiding principles governing mutual cooperation in research & development, procurement and logistic support of conventional defense supplies and services. 본 MOU 및 부속서에서는 연구개발과 조달, 재래식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하여 상호 군수지원 협력에 관련된 주요지침을 규정한다.
B 그 룹	9개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Supplies Procurements including defense articles; 국방물자를 포함하는 군수품의 조달 Service Procurements in support of defense articles. 국방물자 지원 용역의 조달
C 그 룹	오스 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MOU covers procurements above \$25,000 or equivalent of Supplies and Research & Development. 본 MOU는 \$25,000 이상 군수품 및 연구개발 조달에 적용된다.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procurement of supplies. 본 협정서는 다음 군수품 구매에 적용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In case of Australia, procurements requiring Advanced Purchasing methods; 호주는 최신 구매방법이 요구되는 조달 In case of the U.S., procurements over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미국은 간소화 획득 기준을 초과하는 조달 Procurements worth such other values as the Governments may mutually determine. 당사국 상호간에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조달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계약을 통하여 공동개발 등 연구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RDP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서 RDP 협력범위에는 연구개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RDP를 체결하면 국내 연구개발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RDP의 연구개발은 국내연구개발과 용어가 유사할 뿐 같지 않다. 방위사업청의 사업관

리규정(2023)을 살펴보면,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국내연구개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의 정부나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형태를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연구개발은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ADD) 또는 방산업체 등에서 주관하지만, 국제공동연구개발은 다수의 국가나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즉, RDP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미국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 비용의 공동분담 또는 상호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에 해당한다. RDP 체결 국 가운데 국내연구개발 시장까지 완전히 미국에 개방한 사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7. RDP 체결형식

RDP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서의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며,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합의되는 문서로서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협정서는 양해각서에 비해 구체적인 합의서로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28개국의 RDP 체결 형식을 살펴보면 64%인 18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머지 36%의 10개국은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다.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8개국이나, 핀란드와 일본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이후 협정서로 변경하면서 현재는 10개국이 협정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RDP 체결형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와 RDP를 체결한 1963년 이후 1980년까지는 양해각서 형식을 취하였으나, 1982년 이후 양해각서 또는 협정서를 선택적으로 체결하였다.

<표 19> RDP Agreement 또는 MOU 체결 현황³⁸⁾

<Table 19> Status of RDP Agreement or MOU

구분	체결국	체결	형식	구분	체결국	체결	형식
1	캐나다	1963년	MOU	15	스웨덴	1987년	MOU
2	스위스	1975년	MOU	16	이스라엘	1987년	MOU
3	영국	1975년	MOU	17	이집트	1988년	MOU
4	노르웨이	1978년	MOU	18	오스트리아	1991년	MOU
5	프랑스	1978년	MOU	19	핀란드	1991년	MOU → Agreement
6	네덜란드	1978년	MOU	20	호주	1995년	Agreement
7	이탈리아	1978년	MOU	21	룩셈부르크	2010년	MOU
8	독일	1978년	MOU	22	폴란드	2011년	MOU
9	포르투갈	1979년	MOU	23	체코	2012년	Agreement
10	벨기에	1979년	MOU	24	슬로베니아	2016년	Agreement
11	덴마크	1980년	MOU	25	일본	2016년	MOU → Agreement
12	튀르키예	1980년	MOU	26	에스토니아	2016년	Agreement
13	스페인	1982년	Agreement	27	라트비아	2017년	Agreement
14	그리스	1986년	Agreement	28	리투아니아	2021년	Agreement

하지만, 2012년 체코 이후 최근까지는 모두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2021년에 양해각서를 협정서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1990년대 초 RDP가 미국과 체결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미국의 방산업체에만 불리하게 기능함에 따라 RDP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 국방부가 상호호혜 원칙에 대하여 RDP의 이행 강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양해각서 보다는 협정

38) 박태준, (2023),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 책과나무.

서를 선호하게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1991년 이후 두 가지 형태가 같이 사용되다가 2012년 이후에는 모두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비공식적인 사전 합의서로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협정서는 구체적인 합의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통상개념이 RDP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즉, 체결형식에 따라 뚜렷하게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 RDP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협력의 범위나 대상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형식에 무관하게 전체적인 조항의 문구나 내용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경우 1991년 처음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2018년에 협정서로 개정하였는데, 기존의 양해각서와 개정한 협정서의 내용과 문구 등이 대부분 동일하였다. 일본도 양해각서를 내용의 수정 없이 협정서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RDP 내용과는 무관하게 양해각서 또는 협정서 형식에 의해서 법적인 효력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정부는 RDP를 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사전 실무회의에서 방위사업청에 양해각서 및 협정서 사이에는 실질적인 효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³⁹⁾ 결국 RDP는 Agreement 또는 MOU 등 체결 형식보다는 협정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RDP 체결로 인한 혜택

미국산우선구매법은 미국산이 아닌 경우 50%의 차별적 추가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미국의 방산시장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을 판정하는 기준은 미국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

39)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의 질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답변(2022.11.)

해야 하는데, 이 비율은 2024년 65%로 높여 적용하며 2029년에는 7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은 국방물자는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하지만, RDP 체결국가에 대하여는 BAA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즉, 적격국가로 대우하여 RDP 체결국가의 방산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DFARS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조달계약시 BAA 면제하는 것이 미국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되기 때문에 차별적 비용부과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9. 적격국가에 대한 미국 방산시장 개방 규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P 체결국에는 BAA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미국 방산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의 불이익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RDP를 체결하면 미국 방산수출이 급격히 확대될까? 일부에서는 RDP를 체결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거대한 방산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기대에 부풀어 신속한 체결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RDP를 체결하는 그 자체만으로 미국 방산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적격국가로서 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미국 정부가 BAA 면제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해외 방산수입을 제한하여 미국 방위산업과 방산업체를 보호하도록 행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며 감시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하여 방산수입을 최소화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RDP를 면제하는 규모는 연방조달의 약 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회계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 Budget)의 2022년 보고서⁴⁰⁾에 의하면 회계연도 2021년 국방비 7,180억 달러의 약 20%에 해당되는

1,463억 달러를 조달에 지출하였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RDP 체결한 적격국가로부터 조달한 금액은 32억 달러로서 이는 국방부 조달액의 약 2.2%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규모이다.

<표 20> 회계연도 2021년 BAA 면제 건수 및 금액⁴¹⁾

<Table 20> Number and Amount Exempted from BAA of FY 2021

Authority	Actions	Dollars	Percentage
The Buy American Act does not apply (Use outside the U.S.)	14,711	\$2,024,993,533	34.85%
Waivers of the Buy American Act			
Qualifying Countries	36,919	\$3,207,536,700	55.20%
WTO GPA and FTA	2,288	\$265,889,354	4.58%
Sub Total	39,207	\$3,473,426,054	59.77%
Authorized Exceptions to the BAA			
Domestic Nonavailability Determinations	2,244	\$225,719,400	3.88%
Commercial IT	341	\$55,736,196	0.96%
Resale	73	\$5,528,167	0.10%
Unreasonable Cost	6,757	\$25,021,494	0.43%
Public Interest Exception	6	\$478,752	0.01%
Sub Total	9,421	\$312,484,009	5.38%
Total	63,339	\$5,810,903,596	100%

BAA 적용이 면제된 건수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2021년 미국 국방부는 해외 조달 63,339건 중에서 RDP 체결국에 대하여 36,919건을 면제하였으며 이는 전

4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2). 「Public Budget database, U.S. Government Budget: Fiscal Year 2023」.

41)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 Sustainment. (2022). 「DoD Report: The Department's Bi-Annual Report on Made in America Laws」.

체의 55.2%에 해당된다. BAA 면제건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 면에서는 국방부 연방조달의 약 2.2%에 불과하다. 이 작은 시장을 두고 28개국이 경쟁하는 것으로서 RDP 체결로 인한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10. BAA 면제방식

RDP 체결국이 적격국가로서 BAA 적용을 면제받는 방법은 면제대상에 따라 포괄면제(Blanket Public Interest Exception, 이하 BPIE)와 개별면제(Purchase-By-Purchase Exception, 이하 PBPE)로 구분된다. 포괄면제는 국방조달 전체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국 정부는 RDP 체결국의 전체 국방물자 구매계약에 대하여 ‘포괄적인 공공이익(Blanket Public Interest)’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RDP 체결국 조달품목에 일괄적으로 BAA의 적용을 면제한다. 미국 국방부장관이 RDP 체결국의 방산물자 전체에 대하여 BAA의 면제 여부를 포괄적으로 결정하면, 이후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면제 결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반면, 개별면제는 구체적인 구매계약 건별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BAA 적용 면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별품목을 대상으로 BAA 면제를 결정하므로 새로운 대상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DP 체결국은 절대적인 다수가 포괄면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별면제를 선택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은 제외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 위주로 선택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 포괄면제에 비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도 RDP의 기본원칙인 상호호혜에 따라 미국에게 유리한 품목을 선택적으로 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결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면제방식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미국과 체결국 모두 같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체결국과 미국이 각기 다른 유형으로 체결한 사례는 없다.

<표 21> RDP 체결국가들의 BAA 면제 유형⁴²⁾

<Table 21> BAA Exemption Type of RDP Countries

구분	체결국	체결년도	체결유형	구분	체결국	체결년도	체결유형
1	캐 나 다	1963년	BPIE	15	스 웨 덴	1987년	BPIE
2	스 위 스	1975년	BPIE	16	이스라엘	1987년	BPIE
3	영 국	1975년	BPIE	17	이 집 트	1988년	BPIE
4	노르웨이	1978년	BPIE	18	오스트리아	1991년	PBPE
5	프 랑 스	1978년	BPIE	19	핀 란 드	1991년	PBPE → BPIE
6	네덜란드	1978년	BPIE	20	호 주	1995년	BPIE
7	이탈리아	1978년	BPIE	21	룩셈부르크	2010년	BPIE
8	독 일	1978년	BPIE	22	폴 란 드	2011년	BPIE
9	포르투갈	1979년	BPIE	23	체 코	2012년	BPIE
10	벨 기 에	1979년	BPIE	24	슬로베니아	2016년	BPIE
11	덴 마 크	1980년	BPIE	25	일 본	2016년	BPIE
12	튀르키예	1980년	BPIE	26	에스토니아	2016년	BPIE
13	스 페 인	1982년	BPIE	27	라트비아	2017년	BPIE
14	그 리 스	1986년	BPIE	28	리투아니아	2021년	BPIE

다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에 RDP를 체결한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는 모두 개별면제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핀란드가 2008년에 포괄면제로 변경하여 현재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RDP 양해각서에 ‘법률, 규정 또는 국가정책에 의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Subject to

42) 박태준, (2023),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 책과나무.

exceptions required by law, national policy or regulation)’함을 명시하여 개별적인 구매건별로 양국의 자국산구매법에 대한 적용 예외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표 22>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의 BAA 면제 유형

<Table 22> BAA Exemption Type of Finland and Austria

구분	RDP 체결내용
핀란드	<p>(1991년 MOU : PBPE) This MOU covers procurements by the defense Ministry of Finland and the U.S. DoD of 본 MOU 는 핀란드 및 미국의 국방부에 의하여 다음의 조달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upplies and related services 군수품 및 관련된 용역 2.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p>Subject to exception required by law, national policy or regulation. 양국의 법률, 규정 또는 정책에 의한 예외 적용이 필요</p> <p>(2018년 Agreement : BPIE) This covers the acquisition of defense capabilities by the DoD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epublic of Finland through 본 협정서는 미국 및 핀란드 국방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위력 획득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2. Supplies Procurements, including defense articles: and 방산 물자를 포함한 군수품 조달 3. Services Procurements, in support of defense articles. 방산 물자를 지원하는 용역의 조달
오스트리아	<p>(1991년 MOU : PBPE) This covers procurements above \$25,000 or equivalent, by the U.S. DoD and the defense Ministry of Austria of 미국 및 오스트리아 국방부에 의하여 본 MOU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25,000 이상 조달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upplies 보급품 2.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p>Subject to exception required by law,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both Governments. 양국의 법률, 규제 또는 국제적 의무에 의한 예외의 적용 필요</p>

주목할 점은 포괄면제를 선택한 대다수 국가들은 연구개발, 조달, 양산, 군수 지원 등 포괄적으로 협력하는데 비해 개별면제를 선택한 오스트리아는 군수품의 조달 및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면제는 품목별로 매년 BAA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K-방산이 미국 시장에서의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면제 보다는 포괄면제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11. 절충교역(Offset Trade)

국내 일부에서는 RDP 체결로 절충교역의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미국은 2021년 10월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의 고위급 면담 시 절충교역 산업협력 쿼터제 비율조정을 요청하였고, 2022년 전략·국제연구센터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산우선획득제도 및 절충교역을 한미 RDP 체결의 걸림돌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RDP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절충교역 축소 또는 폐지 압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RDP를 체결한다고 모든 국가들이 절충교역을 반드시 축소 또는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 23>에 서와 같이 RDP 체결국 협정서를 살펴보면, 절충교역 협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충교역 축소 또는 폐지를 의무조항으로 RDP 협정서에 포함한 국가는 없다. 22개국으로 가장 많은 유형은 ‘절충교역이 방위산업 기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Agree to discuss measures to limit any adverse effects that offset agreements have o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of each country.)’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등 3개국은 절충교역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표 23> RDP 28개국의 절충교역 협력

<Table 23> Offset Trade Cooperation of RDP 28 Countries

구 분	RDP 체결국 협정서별 세부내용
유형 #1 (22개국)	• 절충교역이 방위산업의 기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동의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등)
유형 #2 (2개국)	• 절충교역의 금액을 교역수지에 포함(스페인, 벨기에)
유형 #3 (1개국)	• 정부가 부과하는 절충교역 요건을 포함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 상호호혜적으로 국방교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스웨덴)
유형 #4 (3개국)	• 절충교역 조항없음(캐나다, 포르투갈, 튀르키예)

다만, 스웨덴은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호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가능토록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비추어 RDP를 체결하려면 반드시 절충교역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방부와 RDP 협상을 추진하는 국방부(또는 방위사업청)의 정책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즉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절충교역 조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대다수의 국가들과 같이 절충교역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논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RDP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방산협력에 있어서 반드시 절충교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RDP 체결로 인하여 국내 절충교역에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RDP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과의 방산교역에서의 절충교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방산교역에서 절충교역 현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방위사업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해외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15.4조원 규모에 달한다. 상업구매(DCS)와 FMS 비율은 각각 49%

와 51%를 차지하였다.

<표 24> FMS와 국외 상업구매 현황⁴³⁾

<Table 24> Overseas DCS and FMS Purchase Status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FMS 구매	78,255 (50.7%)	25,068	15,403	24,370	9,234	4,180
상업구매	76,174 (49.3%)	14,475	9,986	23,416	17,062	11,235
계	154,429 (100%)	39,543	25,389	47,786	26,296	15,415

<표 25> 국가별 국외 상업구매계약 현황⁴⁴⁾

<Table 25> Overseas DCS Contract Status by Country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미 국	42,268 (55.5%)	8,233	5,587	11,951	10,303	6,194
스페인	2,867 (3.8%)	126	425	678	715	923
영 국	5,614 (7.4%)	1,511	547	773	1,988	795
독 일	2,327 (3.0%)	409	360	440	442	676
이스라엘	5,253 (6.9%)	2,153	651	773	1,337	339
기 타	17,845 (23.4%)	2,043	2,416	8,801	2,277	2,308
계	76,174 (100%)	14,475	9,986	23,416	17,062	11,235

43) 방위사업청, (2023),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p107.

44) 방위사업청, (2023),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p121.

또한 <표 25>에서 보면 국외 상업구매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상업구매는 42,268억원이지만, FMS가 미국 정부의 방산수출 제도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방산수입은 이 둘을 합해야 한다. 결국 5년간의 국외구매액 15.4조원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상업구매 4.2조원과 FMS 구매 7.8조원을 합한 12조원으로서 전체 국외구매의 78%에 이른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산수출 실적이 많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은 절충교역 효과를 얼마나 보았는지 살펴보자. 최근 5년(2018~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국외구매의 78.0%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23.4%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는 3.4% 규모를 구매했으나, 22.6%의 절충교역 가치를 확보하여 미국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이처럼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페인, 독일,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6> FMS에서의 절충교역 비용과 관련된 미국 규정

<Table 26> DFARS Regulation Relating to the Cost of Offset Trade

DFARS 225.7303-2 (3) Offsets. (i) An offset agreement is the contractual arrangement between the FMS customer and the U.S. defense contractor that identifies the offset obligation imposed by the FMS customer that has been accepted by the U.S. defense contractor as a condition of the FMS customer's purchase. These agreements are distinct and independent of the LOA and the FMS contract. 절충교역은 FMS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구매국이 부과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미국의 방산업체가 수용하는 것으로서 FMS 고객과 미국의 방산업체 간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LOA 및 FMS 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FMS 구매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외구매 중 50.7%를 미국으로부터 FMS로 구매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무상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다. 미국 방산업체가 FMS 절충교역 비용은 판매단가에 포함하여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에 청구함으로써 절충교역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절충교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는 무간섭(Hand-Off)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DFARS를 개정하여 FMS 구매계약과는 별도로 절충교역을 추가적인 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방산업체가 FMS 절충교역 비용을 미국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FMS와 관련된 절충교역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반대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각각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유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FMS 구매에 대한 무상 절충교역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으로부터의 구매한 금액은 12조원으로 전체 국외구매의 78%인데 반하여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23.4%로서 구매금액의 1/3에도 크게 못 미친다.

<표 27> 2018년~2022년 국가별 국외구매 대비 절충교역 확보가치⁴⁵⁾

<Table 27> Off-Set Values vs. Foreign Purchases by Country(2018~2022)

구 분	국외구매액	절충교역 확보가치
미 국	120,523억원(78.0%) *	180.4백만 불(23.4%)
이스라엘	5,253억원(3.4%)	174.2백만 불(22.6%)
영 국	5,614억원(3.6%)	146.9백만 불(19.0%)
기 타 * *	23,037억원(14.9%)	270.3백만 불(35.0%)
합 계	154,429억원(100%)	771.8백만 불(100%)

* 미국은 상업구매(42,268억원)와 FMS 구매(78,255억원)를 모두 포함한 금액

** 프랑스, 싱가포르, 스페인, 독일, 호주

45) 방위사업청, (2023),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p.91-121.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절충교역 가치는 질적으로 어떠한가 살펴보자.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무상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기술이전, 수출, 장비 등을 획득하는 이외에 경제협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가치는 기술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수분야에서도 반도체, AI 등 핵심기술을 다른 국가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미국에서의 국방과학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가히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다. 가장 좋은 절충교역은 구매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은 전체의 7.2%로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국방과학 기술을 이전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표 28> 최근 5년간 국내 참여업체별 절충교역 확보가치⁴⁶⁾

<Table 28> Offset Values by Domestic companies over the past 5 years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계	기술이전	수출	장비 등 획득
대기업	84.6 (16.8%)	2.9 (3.4%)	80.4 (95.0%)	1.3 (1.6%)
중견기업	77.6 (15.4%)	0.9 (1.2%)	76.2 (98.2%)	0.5 (0.6%)
중소기업	341.3 (67.8%)	32.7 (9.6%)	292.7 (85.7%)	15.9 (4.7%)
계	503.5 (100%)	36.5 (7.2%)	449.3 (89.3%)	17.7 (3.5%)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절충교역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절충교역이 국내 방산

46) 방위사업청, (2023),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p.92.

기술 이전에 효자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미국의 해외 과학기술 유출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최근의 절충교역 성과는 과거와는 달리 질적, 양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어 더 이상 선진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2016~2020년간 8억 달러로 과거 5년(2011~2015년)의 80억 달러 대비 무려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또한 2016~2020년 무기수입액 13조 6,000억 원 대비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이전은 절충교역을 통한 일방향 기술이전에서 RDP를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양방향 기술교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동연구개발에 일정 부분 중소기업체의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절충교역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RDP 협상과정에서 이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효없는 절충교역을 고집하기 보다는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절충교역을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미국과의 절충교역이 구매한 금액 대비 1/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기술이전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12. 방산협력의 프레임워크 구축

RDP를 체결함에 있어 기본협정서는 구체적으로 이행방안 등을 확정하기 보다는 방산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략적인 틀을 정하는 조항들이 대부분으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부속서는 다르다. 기본협정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협력

의 기본원칙, 협력범위, 유효기간, 종결절차, 절충교역, 정기회의 등 정형적인 협력의 틀을 정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이나, 협력방안, 이행절차 등은 부속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일부에서는 RDP 기본협정서만으로 미국과 강력한 방산협력의 법적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손, 즉 보이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방산업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RDP 체결에 더 소극적이다. 물론 Agreement 또는 MOU 모두 국가간의 협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를 살펴보면 미국과 체결국 상호간의 방산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미국과 RDP를 체결한 국가들의 기본협정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RDP 체결을 논의하면서 협정서 초안으로 제시한 리투아니아의 협정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하여 정하기보다는 개략적으로 방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정하는 쪽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에 게시된 미국 연방관보⁴⁷⁾에도 이러한 RDP 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즉, RDP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방위산업에서의 합리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적인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접근방법 및 조달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RDP를 체결함으로써 국방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 및 절차 등의 합의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RDP 체결로 우선 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협력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

47) "Negotiation of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2024,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2/23/2024-03705/negotiation-of-a-reciprocal-defense-procurement-agreement-with-the-republic-of-korea>, 검색일: 2024.04.20.)

를 통하여 방산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RDP 체결국의 협정서를 살펴보면 프랑스 등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상호협의를 또는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RDP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기본협정서와 부속서를 함께 체결하면 달라지겠지만, 기본협정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방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의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이후에 부속서 또는 정례회의 등을 통해 상호 방산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9> RDP 이행을 위한 정기회의

<Table 29> Regular Meeting for RDP Implementation

구 분	RDP 체결국 협정서별 세부내용
유형 #1 (3개국)	• 연 1회 이상 회의(스페인, 프랑스, 이스라엘)
유형 #2 (9개국)	• 이행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 (룩셈부르크, 영국,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일본, 에스토니아 등)
유형 #3 (2개국)	• 상호협의를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회의 (이탈리아, 독일)

결국 RDP를 체결한다고 실질적인 방산협력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협정체결로 인한 영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협정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속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RDP 기본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중대한 법적인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일부에서 RDP를 방산분야 FTA라고 표현한 데에서 기인한 듯 싶다. 하지만, FTA 협정은 경제적인 투자 및 무역을 자유화하고 확대하

기 위한 상호 경제개방을 목적으로 하며, 협정서는 세부적인 합의사항 및 부속서를 포함하여 약 580페이지에 이른다. 반면 RDP 기본협정서는 방산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협정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리투아니아 협정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8페이지에 불과하다. 내용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제2절 종합 및 시사점

본 논문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과 RDP를 체결하고 있는 28개국 전체에 대하여 협정서의 주요항목을 비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RDP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미국의 국방부가 국가 안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상호 방산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는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 RDP는 미·소 냉전시기에 공산진영에 대한 대응을 위해 NATO 회원국과의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NATO 회원국의 방산 교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상쇄하고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RDP 이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도 감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RDP 체결한 이후에도 미국에 의한 방산시장의 잠식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RDP의 협력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NATO 이외의 우방국과도 RDP를 체결하였다.

둘째, 미국은 1963년에 캐나다와 처음으로 RDP를 체결한 이후 28개 국가와 RDP를 체결하였으며, 이들은 아직까지도 모두 RDP를 종결하지 않고 방산협력

을 유지하고 있다. RDP 체결로 인해 방산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지금까지 28개국 모두 RDP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RDP를 체결하면 국내 방산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상호호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RDP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만 일방적인 출혈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모든 RDP 기본협정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체결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건만을 충족하면 종결할 수 있다. 상대국 승낙이 RDP 종결을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종결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넷째, 절충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절충교역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2개국의 경우에는 절충교역이 미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이 대책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어 RDP를 체결하면 절충교역을 축소하거나 또는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도 많은 국가들이 RDP 체결 이후에도 절충교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절충교역보다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RDP를 체결한다고 미국의 거대한 방산시장이 모두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제한적으로 BAA 면제가 허용되므로 RDP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RDP를 활용하여 K-방산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RDP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RDP는 미국과 체결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약이므로 미국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RDP 체

결국에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미국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성과가 발생한다면 미국 정부는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RDP 체결국은 적격국가로서 BAA의 적용 예외 인정, 관세와 같은 일부 세제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즉, 미국 방산업체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방연방조달 분야에서 미국산 방산물자와의 가격의 차별만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체결국에도 똑같이 요구될 것이다.

일곱째, RDP는 기본협정서와 부속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협정서에는 방산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나 범위 등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부속서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 부속서는 RDP 기본협정서를 체결하면서 RDP의 일부로서 함께 포함하거나, 또는 RDP를 체결한 이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기본협정서의 부속서로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속서는 기본협정서와 같은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나, 협정서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부속서가 유효하므로 효력 면에서는 기본협정서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속서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므로 체결국의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P를 체결한다고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RDP 체결과는 무관하게 ITAR, Jones Act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수입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RDP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러한 미국의 법규 및 제도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NATO 회원국의 경우에는 RDP 체결 후 방산교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RDP에 대응하여 국내법이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반면, 미국은 일부 NATO 국가들이

RDP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경험으로 1990년 초에 RDP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관련되는 법이나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제4장 RDP 영향 분석

제3장에서는 RDP 협정서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하였는지 비교하였으며, 협정문에 담긴 합의 및 실제 체결 이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RDP 체결국들이 RDP 체결 전후의 방산 수출입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RDP를 체결 전후의 세계 각국으로의 글로벌 방산수출 및 미국과의 수출입 실적 변화가 해당국 방산시장에 미친 영향과 긴밀히 관련 있다는 가정하에 주요 RDP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 미국으로부터의 방산수입 실적의 개략적인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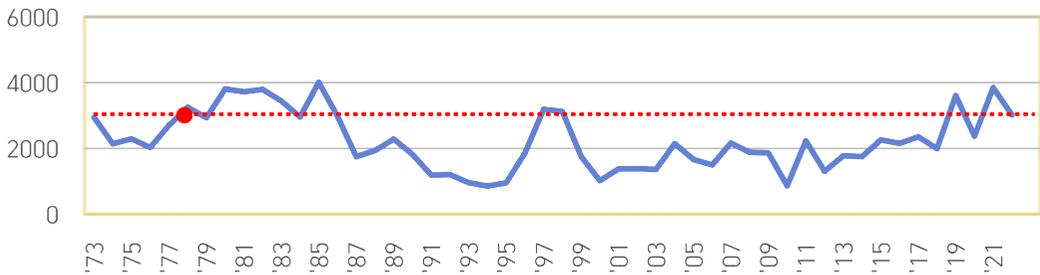
제1절 RDP 주요국의 수출입 실적 변화⁴⁸⁾

1. 프랑스(세계 방산수출 2위, 1978년 RDP 체결)

<그림 4>과 같이 프랑스는 1978년에 RDP를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글로벌 방산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장기간 저조한 실적이 유지되었다.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증가하였다. RDP 체결 5년 전인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적인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RDP 체결 이전 평균치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의 미국으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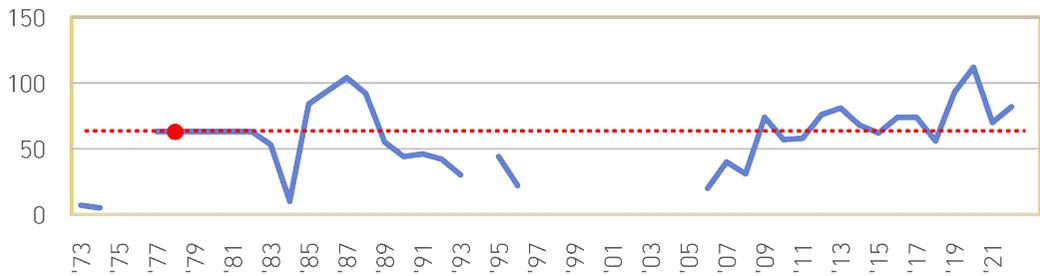
48) 박태준. (2024).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8(3)).

방산수입은 1991년 전후로 일시적인 증가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RDP 체결 이전보다는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프랑스는 RDP 체결 후 글로벌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여 적어도 RDP를 체결함으로써 인하여 프랑스 방산시장이 잠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림 4>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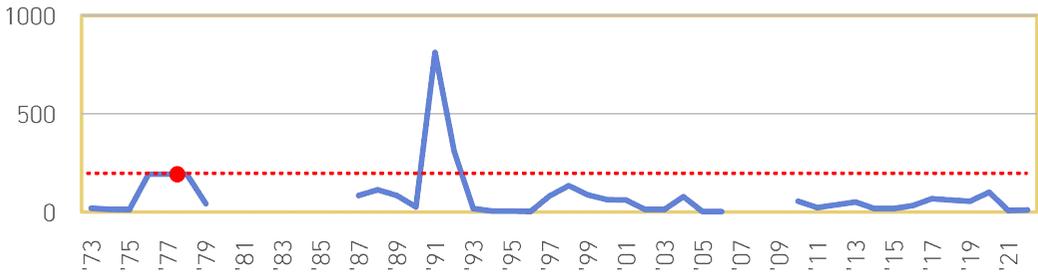
<Fig. 4>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3 to 2022



<그림 5>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5>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3 to 2022

49) X축은 분석기간(RDP 체결 이전 5년~2022년)이며, 빨간색 점은 RDP를 체결한 연도를 표시한다. Y축은 수출입 실적으로 백만 단위로 표현된 SIPRI 추세기표값(TIV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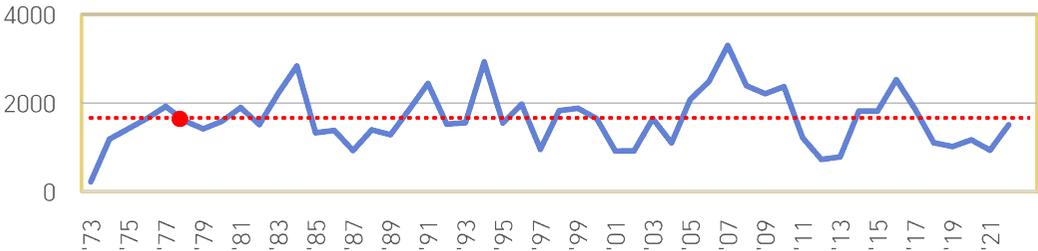


<그림 6>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Fig. 6>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3 to 2022

2. 독일(세계 방산수출 5위, 1978년 RDP 체결)

독일은 1978년에 RDP를 체결하였으며, <그림 7>과 같이 1981년부터 4년 간은 글로벌 방산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RDP 체결 전 5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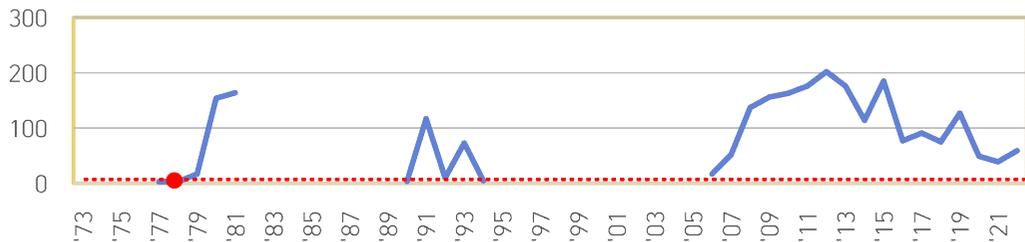


<그림 7>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7>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3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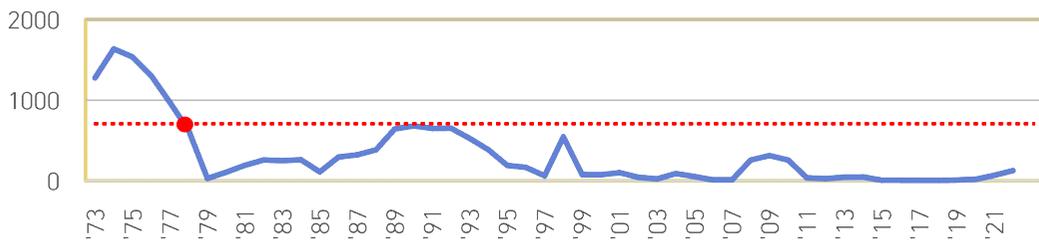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은 <그림 8>에서와 같이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은 RDP 체결 이전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RDP 체결 후 글로벌 수출 및 미국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와 같이 독일도 RDP 체결로 방산시장이 잠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림 8>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8>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3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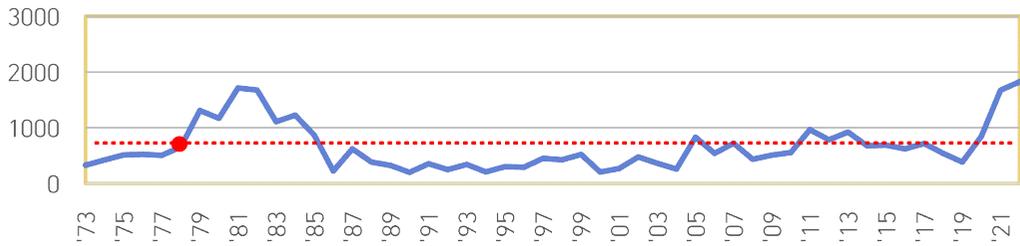
<그림 9>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Fig. 9>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3 to 2022

3. 이탈리아(세계 방산수출 6위, 1978년 RDP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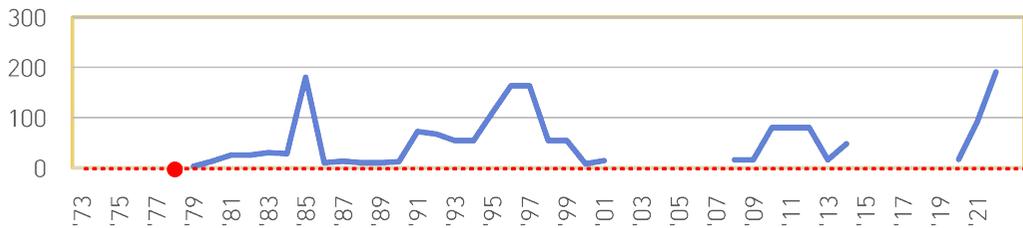
이탈리아는 <그림 10>과 같이 1978년에 RDP를 체결한 이후 1986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예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으로의 방산수출도 <그림 11>에서 보듯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방산수입은 <그림 12>와 같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이탈리아는 RDP 체결 후 글로벌 수출은 평균적으로는 증가하였다. 미국과의 방산교역은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RDP 체결로 인하여 이탈리아 방산시장이 잠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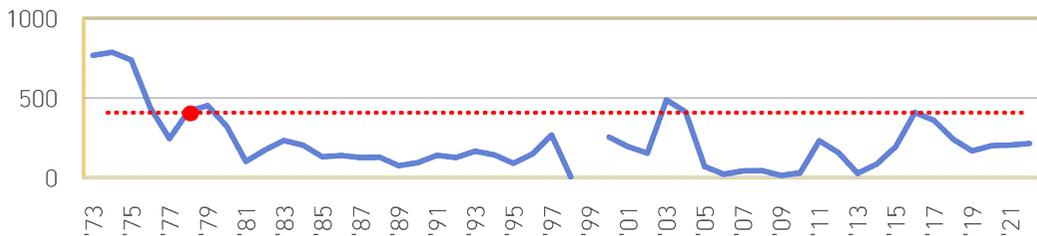
<그림 10>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10>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3 to 2022



<그림 11>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11>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3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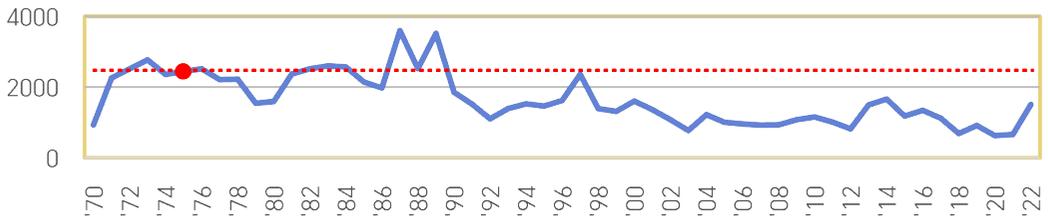


<그림 12>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Fig. 12>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3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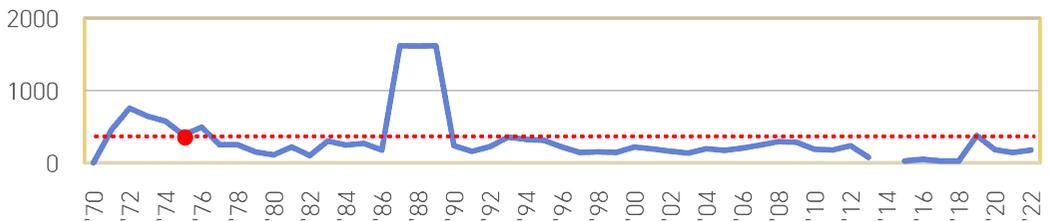
4. 영국(세계 방산수출 7위, 1975년 RDP 체결)

영국은 1975년에 RDP를 체결하여 <그림 13>, <그림 14>과 같이 글로벌 방산수출 및 미국 방산수출 모두 198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그림 15>의 미국 방산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영국의 경우 RDP 체결 후 글로벌 수출 및 미국 수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미국 수입은 증가하였다. 다양한 외생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전적으로 RDP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RDP 체결 전후의 글로벌 방산수출 및 미국 수출입의 실적 변화가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과 긴밀히 관련 있다는 가정하에 RDP 체결로 인하여 영국의 방산시장 잠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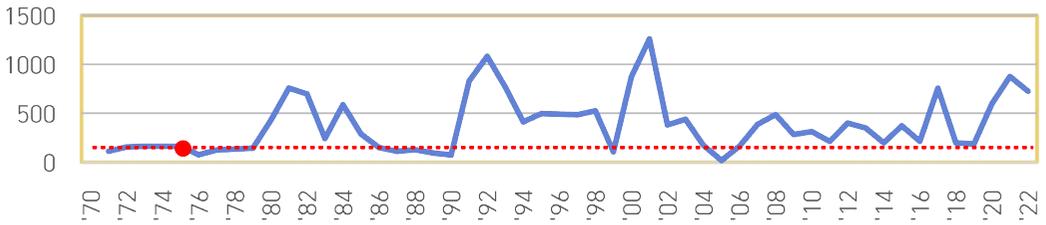
<그림 13>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0년~2022년)

<Fig. 13>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0 to 2022



<그림 14>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0년~2022년)

<Fig. 14>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0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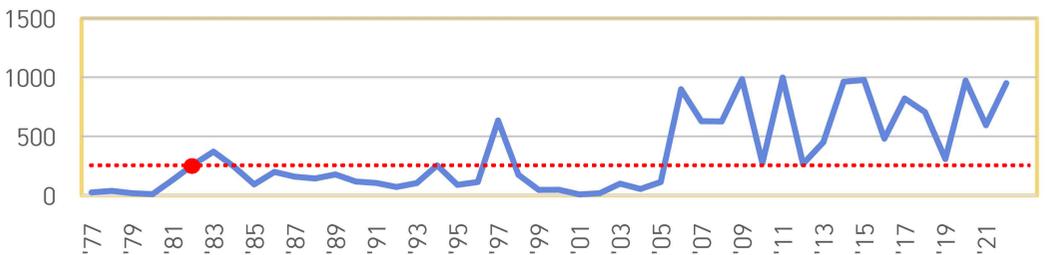


<그림 15>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0년~2022년)

<Fig. 15>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0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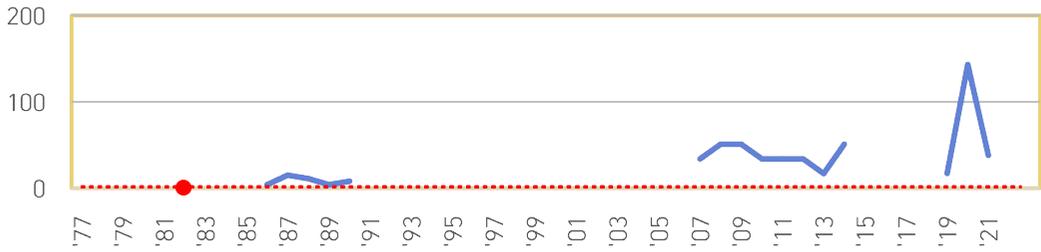
5. 스페인(세계 방산수출 8위, 1982년 RDP 체결)

1982년 RDP를 체결하여 2005년까지는 글로벌 방산수출이 큰 변동없이 소폭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방산수출도 간헐적이기는 하나 RDP 체결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8>의 미국 수입은 RDP 체결한 후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결국 스페인 글로벌 수출은 RDP 체결 후 초기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국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수입은 198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RDP로 인하여 스페인 방산시장이 잠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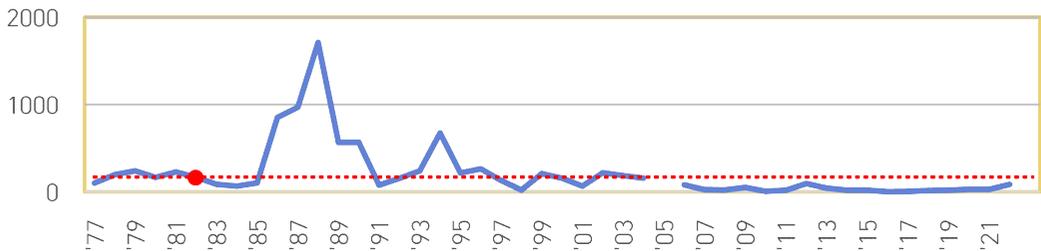
<그림 16>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7년~2022년)

<Fig. 16>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7 to 2022



<그림 17>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7년~2022년)

<Fig. 17>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7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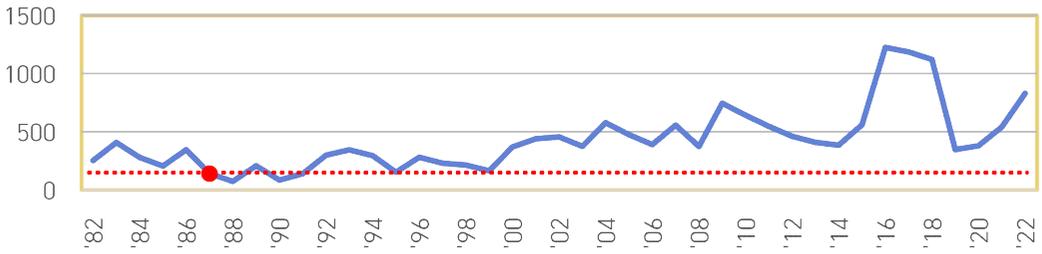


<그림 18>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7년~2022년)

<Fig. 18>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7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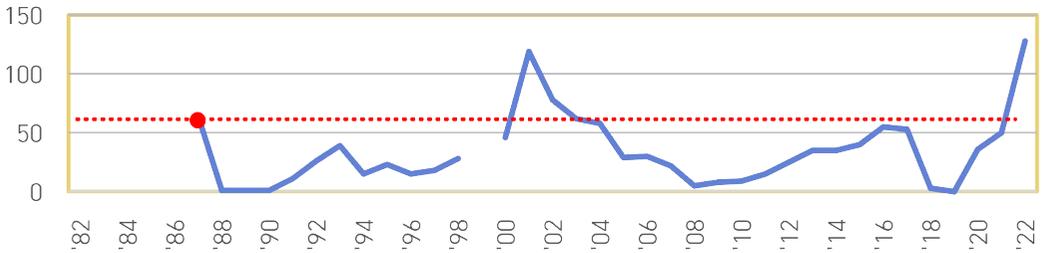
6. 이스라엘(세계 방산수출 9위, 1987년 RDP 체결)

이스라엘은 1987년에 RDP를 체결한 후 글로벌 방산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방산수출도 <그림 20>처럼 RDP 체결 이전에는 실적이 없었으나, 1987년을 포함하여 RDP 체결 이후 수출실적이 증가하였다. 수입은 <그림 21>과 같이 시기별로 변동이 심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RDP 체결 후 글로벌 수출 및 미국 수출 모두 증가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RDP 체결로 인하여 방산시장이 잠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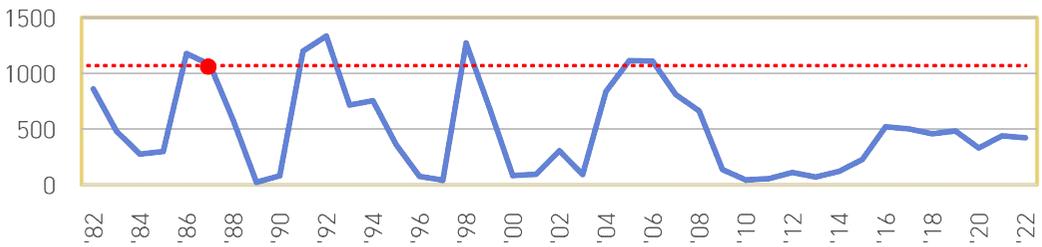
<그림 19>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82년~2022년)

<Fig. 19>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82 to 2022



<그림 20>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82년~2022년)

<Fig. 20>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82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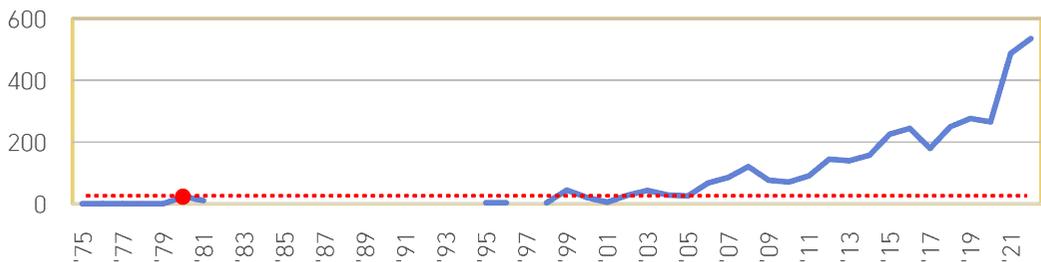


<그림 21>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82년~2022년)

<Fig. 21>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82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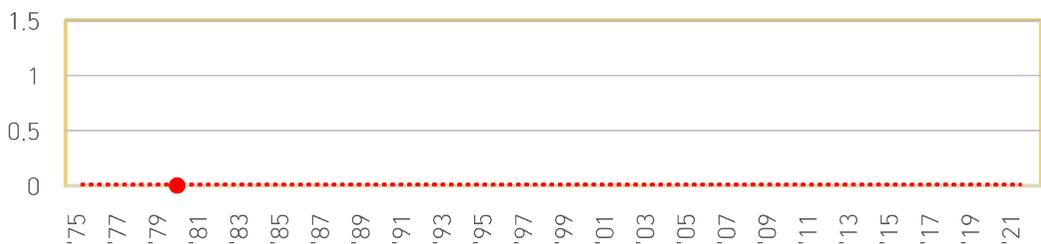
7. 튀르키예(세계 방산수출 11위, 1980년 RDP 체결)

튀르키예는 1980년에 RDP를 체결한 후 글로벌 방산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방산수출은 RDP 체결과 무관하게 수출실적이 없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림 24>과 같이 RDP를 체결한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감소추세이다. 결국 튀르키예는 RDP 체결 후 글로벌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미국 수입도 증가하였다. RDP 체결로 인한 글로벌 방산수출과 미국 수입이 서로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정적인 분석은 제한되나, 글로벌 방산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 수입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산시장이 잠식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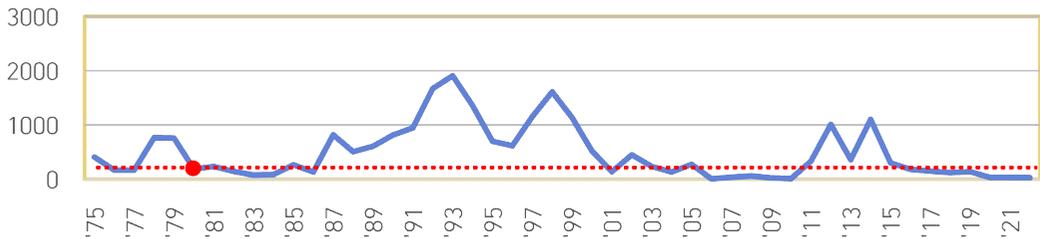
<그림 22>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5년~2022년)

<Fig. 22>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5 to 2022



<그림 23>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5년~2022년)

<Fig. 23>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5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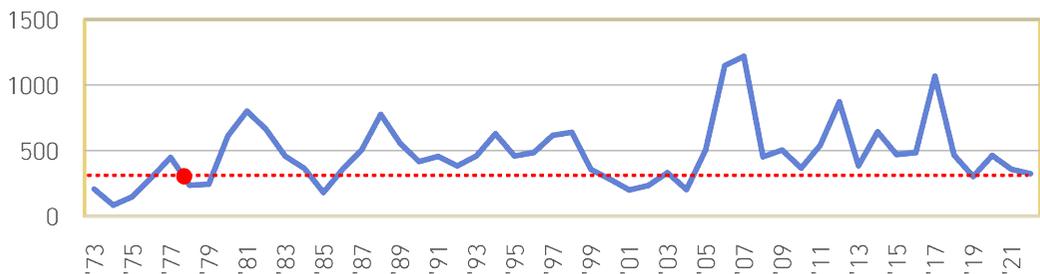


<그림 24>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5년~2022년)

<Fig. 24>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5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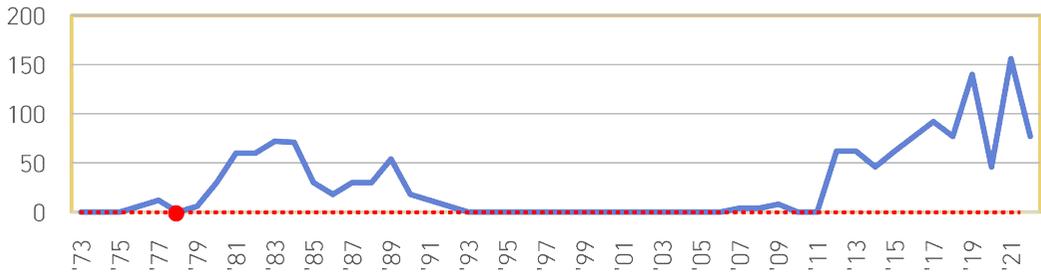
8. 네덜란드(세계 방산수출 12위, 1978년 RDP 체결)

네덜란드는 1978년 RDP 체결 후 <그림 25>처럼 글로벌 방산수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6>의 미국 방산수출도 RDP 체결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방산수입은 <그림 27>처럼 1980년대에는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이다. 결국 네덜란드는 RDP 체결 후 일시적으로 미국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평균적으로 감소추세이며, 글로벌 및 미국 수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아 RDP 체결로 방산시장이 잠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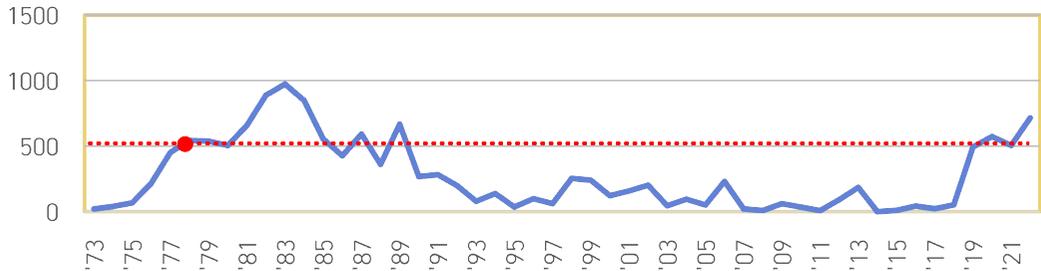
<그림 25> 글로벌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25> Global Defense Exports from 1973 to 2022



<그림 26>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1973년~2022년)

<Fig. 26>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1973 to 2022



<그림 27>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실적(1973년~2022년)

<Fig. 27> Defense Imports from the U.S. from 1973 to 2022

제2절 종합 및 시사점

8개국에 대한 RDP 체결 전후의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RDP 체결로 인한 뚜렷하고 정형적인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RDP를 체결했다고 일률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하지는 않았다. <표 30>에서와 같이 국가별로 글로벌 수출, 미국 수출입 실적이 각각 상이한 양상

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RDP를 체결한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30> 분석대상국의 RDP 체결 이후 수출입 실적 변화 요약

<Table 30> Summary of th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of Eight Countries after RDP Signing

구분	분석대상국	RDP 체결 이후 수출입 실적			종합
		글로벌수출	미국수출	미국수입	
1	프랑스 세계 방산수출 2위 1978년 RDP 체결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중립적
2	독일 세계 방산수출 5위 1978년 RDP 체결	중립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3	이탈리아 세계 방산수출 6위 1978년 RDP 체결	다소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4	영국 세계 방산수출 7위 1975년 RDP 체결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5	스페인 세계 방산수출 8위 1982년 RDP 체결	다소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6	이스라엘 세계 방산수출 9위 1987년 RDP 체결	긍정적	긍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7	튀르키예 세계 방산수출 11위 1980년 RDP 체결	긍정적	변화없음.	부정적	중립적
8	네덜란드 세계 방산수출 12위 1978년 RDP 체결	다소 긍정적	긍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스페인, 이스라엘, 네덜란드는 글로벌 수출 및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미국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로서 수출입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영국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출과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뚜렷한 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RDP 체결 전과 비슷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튀르키예는 각각 글로벌 수출과 미국 수입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이 잠식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분석결과를 볼 때, 분석대상 8개국 중에서 영국을 제외한 7개국에서 RDP를 체결한 이후에 국내 방산시장이 잠식되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보면 RDP를 체결한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수출 및 대미 수출입 실적은 RDP 체결 전후에 모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영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5개국 모두 RDP를 체결한 이후에 미국 방산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RDP를 체결하면 국내 방산시장이 크게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미국 수입은 증가하였지만 글로벌 수출은 199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방산시장이 잠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RDP 체결국에서 방산시장의 잠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RDP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이 RDP 체결하는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 보다는 안보협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려와 같이 RDP 체결국의 방위산업이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잠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970~1980년대 NATO 국

가들의 사례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RDP를 체결하여 자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일부 NATO 국가들은 방산교역 불균형에 불만을 품고 RDP에서 협의된 상호호혜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미국이 8:1로 월등히 우세했던 방산교역은 2:1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NATO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불이익도 감수하였다. 결국 RDP를 체결하면 국내 방산시장이 급격하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RDP 체결로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이 획득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지 수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RDP 정책에 기인한 것 같다. 즉, 대규모의 민수시장 개방을 두고 경쟁하는 FTA와는 달리 RDP는 안보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연방조달시장의 약 2~3%만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연방조달시장에서 RDP를 체결한 28개국이 경쟁해야 하므로 획기적인 미국 방산수출이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

셋째, 미국 방산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RDP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과 같은 예외는 있지만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RDP를 체결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또는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RDP는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도구(Tool) 내지는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체결국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도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미국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방위산업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K-방산의 강점은 확대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분석에 있어서 SIPRI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였

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들은 국가안보 또는 계약 비밀유지의무 등의 이유로 정확한 수출입 실적 데이터를 SIPRI에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IPRI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방산수출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는 연구기관으로서, 본 연구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방산수출입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연구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국가별 방산수출입 분석을 통하여 RDP 체결로 인한 수출입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김종출⁵⁰⁾, 최기일⁵¹⁾, 김호성⁵²⁾ 등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김종출은 RDP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방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최근 5년('18~'22년) 동안 국외구매의 78%를 미국에서 구매⁵³⁾하는 등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무기 수입을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더 이상 급격한 국내 방산시장의 잠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광현⁵⁴⁾은 분석결과에 동의하면서도 수출입 실적 변화가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분석 방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외생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입 변화가 RDP 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가정하에 국내시장 잠식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모든 외생변수를 확보할 수 없었던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원준⁵⁵⁾, 유형곤⁵⁶⁾ 등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원준은 국가별로

50)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광운대 겸임교수

51) 상지대학교 교수,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52) 창원대학교 첨단방위공학과정 교수

53) 방위사업청. (2023).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120-121)

54)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전 한화시스템 부장

55)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자문위원, 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56)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자문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자문

RDP 체결 전후 5년~10년 이내 같은 기간의 수출입실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DP 체결 전후의 수출입 실적을 동등하게 비교해야 그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형곤은 RDP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의 방산정책 및 방산환경 등을 반영하는 근거자료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5장 RDP 활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미국 방산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차별 해소

미국은 자국의 방위산업과 방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BAA 등을 통해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왔다. 해외 방산업체는 미국 방산시장에서 50%의 차별적인 비용을 부과받아 가격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RDP를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RDP는 상호호혜적으로 서로의 방산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BAA는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조달을 촉진하는 자국산우선구매법이지만, RDP를 체결한 국가의 방산업체에게는 미국의 방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서 차별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RDP는 상대국 방산업체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이다. 국가별 법규 또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방 조달을 위한 방산시장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상호 간에 상대국의 방산업체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RDP가 모든 분야에 대해 자국의 방산업체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가격경쟁에 있어서 차별적인 비용 부과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2019~2023년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RDP 체결이 왜 필요한지 더욱 분명해진다. 대상기간 동안 미국으로 방산수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6개국인데, RDP를 체결한 영국 등 12개국이 미국 방산수입의

90.2%를 점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네덜란드는 미국 방산수입의 12.1%, 스웨덴은 6.1%나 차지하는 등 한국보다 세계 방산수출 순위가 낮은 10개국도 미국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방산수출 10위권 국가들 중에서 3위인 러시아, 4위인 중국과 10위 한국을 제외한 영국 등 6개국은 모든 RDP를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방산수입 상위권으로서 미국 방산수입의 29.7%를 점유하고 있다.

<표 31> 2019년~2023년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⁵⁷⁾

<Table 31> Defense Exports to the U.S. from 2019 to 2023

순위	국 가	RDP 체결	세계 방산수출 순위 (점유율)	대미 수출실적 *
1	영 국	1975년	7위(3.7%)	1,014(25.5%)
2	네덜란드	1978년	12위(1.2%)	481(12.1%)
3	프 랑 스	1978년	2위(11%)	404(10.1%)
4	독 일	1978년	5위(5.6%)	336(8.4%)
5	이스라엘	1987년	9위(2.4%)	298(7.5%)
6	이탈리아	1978년	6위(4.3%)	296(7.4%)
7	스 웨 덴	1987년	13위(0.8%)	241(6.1%)
8	스 페 인	1982년	8위(2.7%)	197(4.9%)
9	요 르 단	미 체결	26위(0.2%)	182(4.6%)
10	노르웨이	1978년	19위(0.4%)	129(3.2%)
11	싱가포르	미 체결	31위(0.1%)	96(2.4%)
12	남아프리카	미 체결	21위(0.3%)	96(2.4%)
13	캐 나 다	1963년	15위(0.6%)	96(2.4%)
14	호 주	1995년	16위(0.6%)	90(2.3%)
15	브 라 질	미 체결	24위(0.2%)	14(0.4%)
16	스 위 스	1975년	17위(0.5%)	13(0.3%)

* 수출실적 : 백만 단위로 표현되는 SIPRI 추세지표값(Trend Indicator Values)

57) “Arms Transfers Database 2019~2023”, 2024, (SIPRI,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_transfers, 검색일: 2024.05.24.)

이는 글로벌 수출실적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세계 방산수출 1위로서 수출 실적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8%의 절반 이상인 29.7%는 앞서 살펴본 RDP를 체결한 6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6개국이 미국의 해외방산수입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RDP 체결하지 않는 한 BAA에 의한 차별적인 비용을 부과받기 때문에 RDP 체결한 28개국의 방산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RDP 체결없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자국산구매법을 지속적으로 추세로 RDP 체결없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RDP는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2. 극심한 한미 방산교역 불균형 해소 또는 완화

RDP를 통해 극심한 한미 방산교역 불균형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해외 방산수입의 72%를 미국에서 수입하지만 미국 방산수출은 매우 저조하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PRI의 2019년~2023년 세계 방산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은 9위로서 국외구매의 72%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독일(15%), 프랑스(9.3%), 영국(2.8%), 이스라엘(0.7%)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실적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표 33>의 SIPRI 2019년~2023년 미국의 국가별 방산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 방산수출 점유율의 5.3%를 차지하여 미국의 방산수출 대상국 상위 5위에 랭크되어 있다. 즉, 한국은 국외구매의 72%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미국의 5번째 방산수출 상위국인 것이다.

<표 32> 2019년~2023년 세계 방산수입 실적⁵⁸⁾

<Table 32> Global Defense Imports from 2019 to 2023

Rank	Importer	Share of global arms imports (%)		changes from 2014-18 to 2019-23(%)	Main suppliers and their share of importer's total imports(%), 2019-23					
		2019-23	2014-18		1st		2nd		3rd	
1	India	9.8	9.1	4.7	Russia	36	France	33	USA	13
2	Saudi	8.4	11	-28	USA	75	France	7.6	Spain	7.0
3	Qatar	7.6	1.5	396	USA	45	France	25	Italy	15
4	Ukraine	4.9	0.1	6633	USA	39	Germany	14	Poland	13
5	Pakistan	4.3	2.9	43	China	82	Sweden	4.0	Tiirkiye	3.8
6	Japan	4.1	1.5	155	USA	97	UK	1.8	Germany	0.4
7	Egypt	4.0	5.3	-26	Germany	27	Italy	22	Russia	20
8	Australia	3.7	4.6	-21	USA	80	Spain	15	Switzerland	2.3
9	S. Korea	3.1	2.8	6.5	USA	72	Germany	15	France	9.3
10	China	2.9	4.9	-44	Russia	77	France	13	Ukraine	8.2

<표 33> 2019년~2023년 미국의 국가별 방산수출 실적⁵⁹⁾

<Table 33> Defense Exports of the U.S. from 2019 to 2023

순위	미국의 수출국	수출실적 * (점유율)	순위	미국의 수출국	수출실적 * (점유율)
1	사우디	8,808(15.1%)	6	영국	2,978(5.1%)
2	일본	5,555(9.5%)	7	우크라이나	2,722(4.7%)
3	카타르	4,808(8.2%)	8	네덜란드	2,680(4.6%)
4	호주	4,170(7.1%)	9	쿠웨이트	2,606(4.5%)
5	한국	3,094(5.3%)	10	이스라엘	2,078(3.6%)

* 수출실적 : 백만 단위로 표현되는 SIPRI 추세지표값(Trend Indicator Values)

58) Pieter Wezeman, Katarina Djokic, Mathew George, Zain Hussain, & Siemon Wezeman. (2024).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SIPRI Fact Sheet, 6).

59) "Arms Transfers Database 2019~2023", 2024, (SIPRI,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_transfers, 검색일: 2024.05.24.)

반면 한국은 세계 방산수출 10위로서 폴란드 등 24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하였지만 미국 방산수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표 34>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155MM 교탄 약 3,000억 원 수출실적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미국 수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수출다변화 정책으로 과거에 비해 한국의 수출국은 23개국으로 증가하였지만 정작 가장 큰 방산시장인 미국으로의 방산수출 실적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표 34> 2019년~2023년 한국의 주요 수출국⁶⁰⁾

<Table 34> Korea's Defense Exports Countries from 2019 to 2023

순위	수출국	수출실적(점유율)	순위	수출국	수출실적(점유율)
1	폴란드	765(27%)	13	에스토니아	43(1.5%)
2	필리핀	519(19%)	14	사우디	14(0.5%)
3	인도	408(15%)	15	에콰도르	12(0.4%)
4	인도네시아	244(8.8%)	16	아랍에미리트	11(0.4%)
5	태국	142(5.1%)	17	세네갈	9(0.3%)
6	영국	134(4.8%)	18	이집트	8(0.3%)
7	노르웨이	108(3.9%)	19	우루과이	5(0.2%)
8	뉴질랜드	96(3.4%)	20	우크라이나	5(0.2%)
9	미얀마	85(3.0%)	21	칠레	3(0.1%)
10	콜롬비아	60(2.2%)	22	이라크	1(0.1%)
11	페루	60(2.2%)	23	나이지리아	1(0.1%)
12	핀란드	54(1.9%)			

60) "Arms Transfers Database 2019~2023", 2024, (SIPRI,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_transfers, 검색일: 2024.05.24.)

따라서, RDP 협상 과정에서 과거 1970년대 유럽 NATO 사례를 근거로 방산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미·소 냉전기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NATO와의 방산협력 증진 필요 하였으나, NATO 불만(방산교역 불균형) 상쇄를 위해 이행과정에서 불리함도 감수하였다. NATO 동맹국과의 방산교역은 1970년대 말 8:1 수준으로 미국이 월등하였지만, RDP를 체결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여 1986년 이후에는 2: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RDP가 미국 국방부의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에 대응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등 현재 미국이 당면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하여 극심하게 불균형된 방산교역의 불균형을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NATO 국가들이 RDP 체결을 통해 1:8의 방산교역 불균형을 1:2 수준까지 완화시켰던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극심한 불균형은 반드시 완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면서도 그에 부응하는 구매력(Buying Power)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특히 절충교역 실적을 보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방위사업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해외 구매예산의 78%에 해당하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전체 확보가치의 23.4% 수준이다. 반면, 이스라엘로부터는 해외 구매예산의 약 3%에 해당되는 무기를 구매하였음에도,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22.6%로서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절충교역 확보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5,235억원으로서 미국의 120,523억원의 4.3%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

페인, 독일,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초라한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구매 규모에 부응하는 구매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방산교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 첨단 감시정찰 및 타격 무기 체계 등을 주로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면서 한미 방산교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지만, 미국 첨단 무기체계에 비해 K-방산의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미국 수출이 부진하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RDP 협상 또는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극심한 방산교역 불균형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국방과학기술의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공허했을 수 있으나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과 같은 지상무기와 장보고-Ⅲ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해성, 청상어, 홍상어 등 해상무기체계 및 FA-50 경공격기, KF-21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 등의 항공 무기체계를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등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이 크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 확대, 한국산 방산 제품 구매 등 극심한 한미 방산교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도 RDP 방산협력 범위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 NATO 국가들과의 RDP 이행과정에서 미국이 안보협력을 위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감수했던 사례가 한국에도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불균형을 표면화시키면서 하나의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K-방산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환점 마련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환경 외에도 정부의 정책지원,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미국과 RDP를 체결하였다고 단기간에 급격하게 수출 또는 수입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 10위의 방산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글로벌 4강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 RDP는 대단히 유용한 접근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방산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중저가 위주의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첨단 무기체계로 변화시키는데 RDP를 활용해야 한다. RDP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첨단 국방과학기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여 K-방산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방산수주액 100억달러를 돌파 및 방산수출국의 다변화 등 호황에도 불구하고 K-방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성비로 대변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K-방산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저가 위주의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가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북핵 대응 감시 및 타격장비 등 첨단 무기체계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K-방산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첨단무기 위주로 수출품목의 개선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에서 있어서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절충교역과 공동연구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절충교역의 경우 과거에는 선진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반대급부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으나, 각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통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회가 직접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이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은 사실상 어렵다.

방사청은 2006년 개칭 이후 미국과 공동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RDP 체결을 전환점으로 미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절충교역에 의한 일방향 기술이전(One-way Transfer)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양방향 기술교류(Two-Way Exchange)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은 2016년 RDP를 체결함으로써 SM-3 Block-IIA 유도탄의 공동연구개발을 성사시켰으며, 그 기술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북·중·러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미사일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RDP 체결로 미국 공동연구개발 등 방산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축적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첨단장비 개발로 국방력 강화함과 동시에 K-방산이 첨단무기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다.

4. 실질적인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한국형 협력모델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한국은 2024년 중으로 RDP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방산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RDP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러시아, 중국으로서,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방산수출 실적이 상위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 대부분이 RDP를 체결하여 미국과 적극적으로 방산협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RDP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의 미국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 방산시장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RDP 체결을 통해서 구체적인 미국과의 방산협력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본협정서 외에도 부속서를 함께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협정

서는 일반적인 상호 방산협력의 큰 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행절차 등은 부속서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부속서를 제외하고 기본협정서만을 체결한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산우선구매법에 의해 받아오던 차별적인 가격의 부과라는 불이익을 면제받는 수준의 효과만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강력한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BAA 면제혜택도 매우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위해서는 기본협정서와 더불어 부속서의 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속서에는 CMMC 협력방안 또는 한국형 협력모델을 추가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방산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협력모델은 미국의 Needs와 한국의 상대적 강점이 부합되어 상호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함정 MRO 분야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안보환경 하에서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이 절실한 미국에 대하여 RDP를 지렛대로 미국의 Needs에 부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를 협력모델로 RDP를 체결한다면 K-방산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RDP 협력모델로서 중국과의 해양력 경쟁에서 열세에 처한 미국의 약점이자 한국이 세계적으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함정분야, 즉 신함 건조 및 MRO 등과 같은 분야를 고려해 봄직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력 경쟁에서 열세에 있으며, 미국 조선소의 능력도 저하되어 함정 MRO의 해외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함정 건조 및 정비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MRO 수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도는 2022년 2+2 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을 통해 4척의 군수지원함 MRO를 수주하였으며, 일본도 2024년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함 등 대형함정에 대하여 90일 미만의 정비는 일본 요코스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모두 Jones Act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낸 성과다. 하지만, 한국은 장관급 또는 정상급에서 이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안된다. RDP가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가장 빠른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이러한 한미간 협력방안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력방안이 구체화하면 RDP의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 방산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RDP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K-방산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방산업체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의 정책지원을 할 것인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절충교역을 축소하고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술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받았던 혜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국형 RDP 협력모델

한국형 RDP 협력모델을 발굴하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RDP는 철저하게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RDP는 미국과 체결국 상호 간에 호혜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에 부응하는 반대급부를 RDP 체결국에도 요구될 것이다. RDP 체결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력 모델을 요구하기 보다는 미국의 필요(Needs)를 파악하여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우 필요한 부분과 또 상대적으

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함정 등과 같은 모델을 발굴하여 RDP 협력모델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왜 함정(Naval Warship)인가?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침예한 해양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압도적인 해군력 팽창에 비해, 미국은 국내 조선산업의 쇠퇴와 방산공급망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아웃소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호혜적 방산협력 증진이라는 RDP 목적에 부응하는 협력모델이라 하겠다.

1.1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력 경쟁⁶¹⁾

패권경쟁(Hegemonic Competition)은 국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과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군사·외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인 경쟁을 말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G2 양극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워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하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력이 쇠약했던 과거에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광양회(韜光養晦)⁶²⁾를 기치로 하여 미국의 관여정책(또는 포용정책)에 편승하였으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하여 G-2로 부상하였다. 이후 도광양회를

61) 박태준. (2023).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 전략」. 책과나무.

62) 도광양회(韜光養晦): 중국이 198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내세운 대외정책이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력이나 국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며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술적으로도 협력하는 외교정책의 일종이다.

버리고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하였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를 내세워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의 강화를 통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추진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기술굴기(技術掘起)를 도모하였다. 중국은 특히 해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고 인도양으로의 자유로운 항행의 교통로를 확보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⁶³⁾과 함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등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1990년대 초에 철수한 이후 남중국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는 공세적인 해양력 강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 이후에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화하였으며, 대만과 아세안 5개국⁶⁴⁾과 남중국해 일대의 섬들에 대하여 해양 관할권 및 영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중국에 열세인 아세안 5개국,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은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및 경제적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이에 대하여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며 강대국들과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하여 판결한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하고 남해 9단선 이내에 포함되는 모든 영해는 중국의 영해라고 주

63) 반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 and Area Denial): 동아시아 주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해군력이 동아시아 주요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서태평양 지배전략을 말한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 해양통제권에 대응하여 지역패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반접근(Anti-Access)은 원거리로부터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 등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부터 진입하지 못하게’ 강요한다. 반면, 지역거부(Area Denial)는 미군이 접근하면 근거리에서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원활한 작전수행을 방해하거나 교란함으로써 스스로 퇴각하도록 유도한다.

64) 아세안 5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장하면서 미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섬을 구축하고 군사기지화 하는 등 남중국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형성된 유엔해양법을 중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국제질서의 개편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하고 미국 해군력이 동아시아의 주요 해역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 봉쇄정책(封鎖政策)을 통해 대응했던 소련과의 패권경쟁과는 달리,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되 글로벌 영역을 확장하는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인 강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무역전쟁 외에 AI·5G·반도체 등 기술전쟁과 공급망 재편 등 그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미국 중심 국제질서는 유지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정치·안보·통상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모색하여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저지하고,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를 탈피하고 다자주의와 함께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한다. 중국 팽창에 대하여 동맹과 연대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을 기존의 동북아시아에서 아세안-인도로 이동시키고 남중국해 지역에서는 미국의 해양력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과 쿼드를 구축하고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과는 오키스를 체결하는 등 다자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력 확장을 견제하고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⁶⁵⁾ 작전을 전개하

65) 항행의 자유 작전: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군사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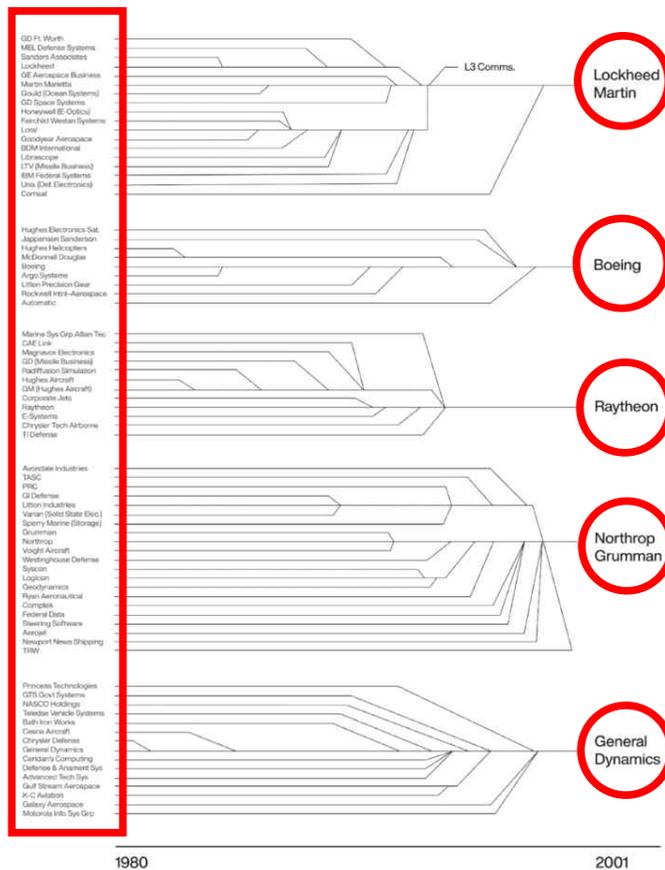
면서 동맹국들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성능이 우수한 함대를 태평양 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 배치시켰으며, 인도-태평양 주변국의 동맹국 해군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 작전환경에 적합한 함정 및 항공기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해상의 A2/AD 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전개념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신에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기치로 내세우며 국제질서의 회복을 선언하였다. 또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과 같은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치동맹을 내세워 민주주의 국가들을 집결시켜 중국에 대응한 동맹구축에 힘쓰고 있다. 신장 위구르, 홍콩 및 대만의 인권 문제, 이념과 가치, 반도체·5G·AI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동맹을 규합하여 전방위적인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민주주의 탄압, 인권 탄압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중국의 핵심이익⁶⁶⁾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12해리 이내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운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발전되는 양상이다.

1.2 미국 방산업체의 공급망 약화로 인한 안보위협 증대

의도도 수행되고 있다.

66) 핵심이익(Core Interests) : 중국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이익으로서 “중국의 기본제도 유지, 영토 및 주권 보호, 국가안보,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말한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력의 상승에 따라 핵심이익을 자의대로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다. 2010년에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방산 공급망이 약화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요인으로 1993년 국방부의 대규모 인수합병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방산업체의 효율성 향상과 내수시장 경쟁 완화 및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방산업체 통합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림 28> 1980년~2015년 미국 방산업체 인수합병⁶⁷⁾

<Fig. 28> M&A among the U.S. Defense Companies from 1980 to 2015

67)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 Sustainment. (2022). 「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State of Competition with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최후의 만찬(Last Supper)’으로도 불리는 방산업체 인수합병 정책으로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51개에 달했던 미국의 공급업체는 보잉, 록히드마틴 등 5개로 축소되었다. 부품 생산업체도 2016년에 69,000개에 달하였으나, 2021년 55,000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방위산업은 자체적인 생산역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하위공급망은 취약하여 결과적으로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공백을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저가 중국산 제품이 대체하였으며 미국 방위산업의 전반에서 중국 부품생산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뒤늦게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단순한 제조업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반적인 방산 공급망을 점검하고 우방국 중심의 대체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함정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조선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쏟고 있으나 미국 조선소 생산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함정의 건조(Ship-Building)에서의 비용은 매우 비싸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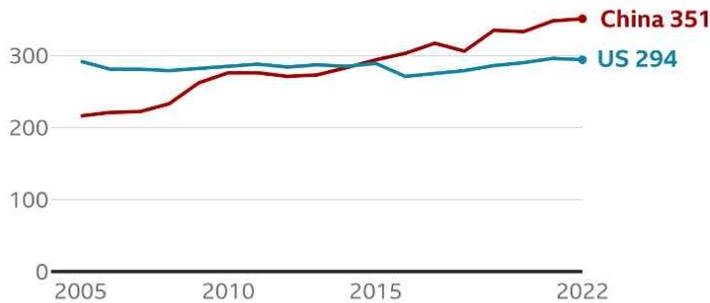
1.3 중국 해군력의 압도적인 팽창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해군 함정 전력의 증강을 추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양·서태평양·유럽 주변 해역에서 점점 더 빈번한 해상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이미 세계 최대로서 미국 해군과 수적인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중국 보유함정 수는 294척으로 미국의 289척을 앞서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약 340척의 군함을 보유하여 300척 미만을 보유한 미국과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잠수함, 기뢰전함, 대양을 항해하는 수륙양용함, 함대 지원함 등 약 340개의 플랫폼을 갖추어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 400척, 2028년에는 44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45년에 되어서야 350척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hina has overtaken the US with the largest navy in the world

Numbers of principal combat ships since 2005



Chinese figures exclude auxiliary and support ships but include patrol craft.
US figures include auxiliary and support ships but exclude patrol craft.

Sourc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2022

BBC

<그림 29>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 현황⁶⁸⁾

<Fig. 29> Ship Numbers owned the U.S. Navy and the Chinese Navy

이처럼 중국 해군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트럼프 이후 심화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고, 2010년대 중반 중국 조선업계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중국이 단순히 숫적인 우위만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 불량, 저가 등의 이미지로 대변되던 과거와는 달리 ‘Made In China’는 2020년대 이후에 성능 면에서도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 2023년 미국의 의회조사국

68) David Brown, “Why China could win the new global arms race”, 2022, (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9600475>, 검색일: 2024.06.2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 보고⁶⁹⁾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대부분은 대함·대잠·대공 능력을 갖춘 최신 다목적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근접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055형 구축함 등 건조 중인 일부 신형 함정의 경우 미국 함정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해군의 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도 중국 함대가 폭발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8년 4월의 미국 태평양 사령관 청문회에서는 중국은 전쟁이 아닌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미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처럼 중국은 수적으로 미국에 앞서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에 분리되어 배치된 미국 해군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평양 한곳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해군의 실제 영향력은 더 클 수도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함정 건조능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3년 미국의 해군장관 Carlos Del Toro는 미국의 조선소는 더 이상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은 13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조선소 한 개가 미국의 조선소를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며 중국 조선소의 수용 능력 및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에 크게 앞서 있어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4개의 국영 조선소를 보유한 미국에 비해 중국은 6개의 주요 조선소와 2개의 소규모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⁷⁰⁾ 건조 속도 면에서도 미국이 함정 1척을 건조하는 동안 중국은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⁷¹⁾

69) US CRS. (2023).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 Issues for Congress」.

70) Brad Lendon, & Haley Britzky, “US can’t keep up with China’s warship building, Navy Secretary says”, 2023, (CNN, <https://edition.cnn.com/2023/02/22/asia/us-navy-chief-china-pla-advantages-intl-hnk-ml/index.html>, 검색일: 2024.04.22.)

중국의 지속적인 해군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대만과의 상황을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근해지역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영향력 또는 통제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이나 중국 근해의 분쟁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군 함정을 이용한 개입을 저지하거나 분쟁지역 도착을 지연시킴으로서 분쟁 해결을 위해 개입하려는 미국의 해군력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의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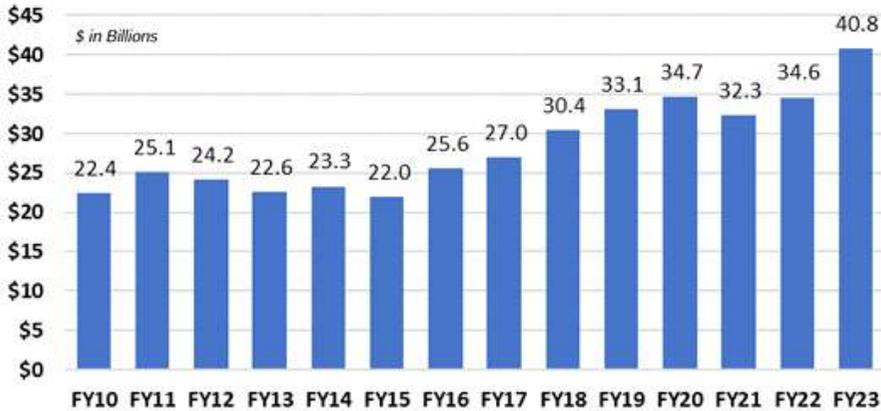
2023년 5월 미국 의회보고서⁷²⁾에 의하면 중국 해군 함정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해군 현대화 계획은 국방계획 및 예산편성의 가장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미국 국방부는 회계연도 2024년 예산요구서에서 해군의 전력증강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함정 건조에 481억 달러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전력증강 예산의 약 15%에 해당되며 해군 전력증강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또한, <그림 30>과 같이 회계연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예산을 살펴보면,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함정 건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미국 정부가 함정 건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여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함정 전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조선소의

71) Brad Lendon,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s. And they’re not American”, 2023, (CNN, <https://edition.cnn.com/2023/06/02/asia/japan-south-korea-naval-shipbuilding-intl-hnk-ml-dst/index.html>, 검색일: 2024.05.05.)

72)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경쟁력 상실로 인한 함정 건조 능력 제한, 높은 함정건조 선가, 취약한 방위산업 공급망, MRO 능력의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미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30> 회계연도 2010년~2024년 미국 함정 건조 예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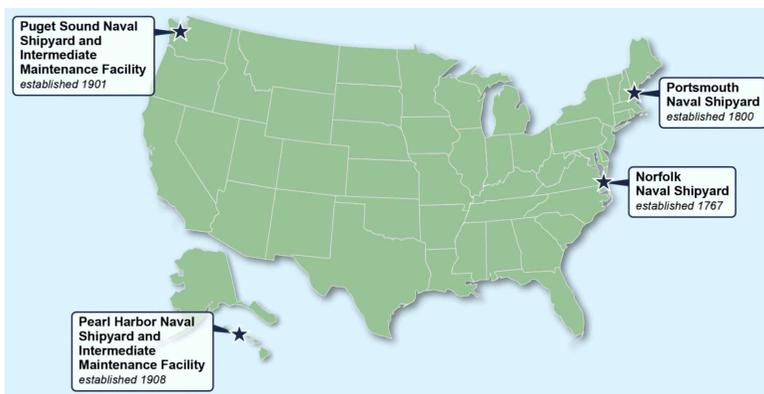
<Fig. 30> Changes in U.S. Shipbuilding Budget from FY 2010 to 2024

미국 조선산업은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이 막히고 상당수의 생산인력이 떠나는 등 급격히 쇠퇴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조선산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숙련된 노동력과 노후된 생산시설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함정 건조비용은 높아지고, 건조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4개의 국영 조선소⁷³⁾가 있다. 이들

73) 포트머스(Portsmouth Shipyard), 노퍽 조선소(Norfolk Shipyard), 진주만 조선소(Pearl Harbor Shipyard), 퓨젯 사운드 조선소(Puget Sound Ship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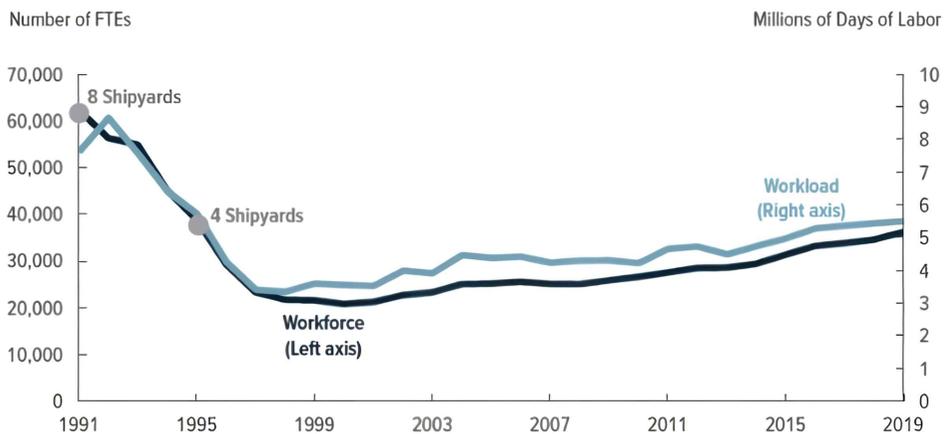
은 미군 해군함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잠수함 및 항공모함 등의 MRO를 수행하고 있는데, 설립된 지 114년에서 255년 이상 경과하였다. 19~20세기 설립 당시에는 증기 및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해군의 최첨단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에 대한 MRO 또는 현대화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해군의 작전 횡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작전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4개의 노후화된 국영 조선소는 MRO 비용 증가 및 일정 지연, 신뢰성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며 미국 해군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8개에 달했던 국영 조선소는 이후 4개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생산능력 및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38>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 MRO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능력 및 인력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전의 절반 수준을 간신히 회복하는 수준이어서 중국과의 해양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함정 증강계획은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림 31> 미국 해군의 4대 국영 조선소

<Fig. 31> Four Largest State-Run Shipyards of the U.S. Navy

미국 해군은 4대 국영 조선소의 인프라 최적화 계획(Shipyard Infrastructure Optimization Program, 이하 SIOP)을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SIOP는 노후화된 4개의 국영 조선소를 현대화 및 최적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100년에 한 번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GAO 보고서⁷⁴⁾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영 조선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림 32> 미국 해군 조선소 업무량 및 인력 변동 현황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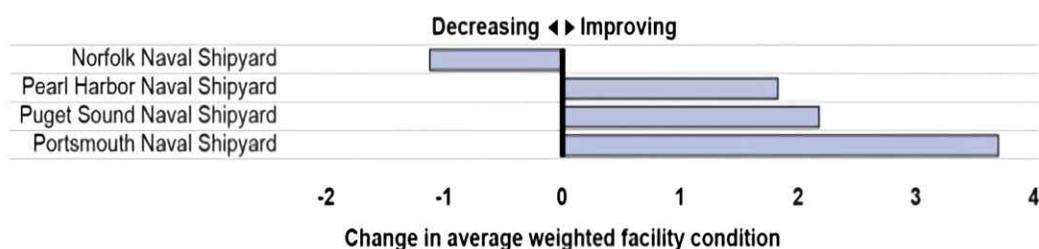
<Fig. 32> Changes in Workload and Workforce of U.S. Navy shipyards

2018년에는 향후 20년 동안 210억 달러를 투자하여 4개 국영 조선소를 현대화 및 최적화하는 SIOP를 시작했다. 또한, 조선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GAO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으며, 미국 의회에서 설정한 최소 수준 이상의 조선소 인

74) GAO. (2022). 「Naval Shipyards: Ongoing Challenges Could Jeopardize Navy’s Ability to Improve Shipyards」

7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ing Data from Naval Sea Systems Command”, www.cbo.gov/publication/57026#da

프라이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퍽 해군 조선소 (Norfolk Naval Shipyard)를 제외한 3개의 국영 조선소는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SIOP도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소 시설 교체 및 현대화 비용이 5년 동안 16억 달러 이상이나 증가하였으며, 조선소 장비의 절반 이상이 이미 예상수명을 초과하여 해마다 평균 연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미국 해군 조선소의 평균 가중치 등급 변화(회계연도 2016년~2020년)

<Fig. 33> Average Weight Facility Condition Changes of U.S. Shipyards (FY 2016-2020)

함정 건조도크(Dry Dock) 현대화 비용도 최초 계획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미국 해군은 17개 건조도크 현대화에 4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 건조도크 현대화에만 40억 달러 이상 소요되었다. SIOP 추진일정도 지연되고 있어 2025년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SIOP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조선소 인프라에 투입된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20년 가량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⁶⁾

76) Parth Satam, “Chinese Navy ‘Burgeons’ With Might & Muscle, US Navy Looks At Japan & South Korea To Counter The PLA Navy”, 2023, (The EurAsian Times, <https://eurasian>)

미국 해군은 앞서 살펴본 함정 건조뿐 아니라 MRO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GAO 보고서에는 태평양사령부 7함대 정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전력은 2년 주기로 ‘작전 → 정비 및 훈련 → 임무수행 인증평가’의 순환식 준비태세 주기(Rotational Readiness Cycle)을 따라야 하는데, 7함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빈번한 분쟁 및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에 대한 대비로 과도하게 많은 작전에 투입되어 정비 및 훈련이 크게 부족하였고 결과적으로 각종 사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본토의 수양함이나 구축함은 작전전개 40%, 정비 및 훈련 60% 비율로 시간을 할당하는 반면, 7함대는 작전전개 67%, 정비 및 훈련 33%로 정비 및 훈련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GAO의 다른 보고서⁷⁷⁾에 따르면 미국 해군 조선소의 정비 지연으로 해군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MRO의 지연으로 1,128일 동안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매년 항공모함 0.5척 이상을 운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같은 기간 잠수함도 MRO 지연으로 인하여 6,296일 동안 운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매년 잠수함 3척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핵추진공격잠수함 보이시함(SSN 764)의 경우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 인터스트리(Huntington Ingalls Industries)社에서 2017년부터 MRO를 수행하여 2021년에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24년에 다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도 한다.

2022년 미국 해상체계사업부(Naval Sea Systems Command) 공격잠수함 사업 책임자는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핵추진공격잠수함 50척 중 18척인 36%가 정

times.com/chinese-navy-burgeons-with-might-muscle-us-navy-looks, 검색일: 2024.04.12.)

77) GAO. (2022). 「Naval Shipyards: Ongoing Challenges Could Jeopardize Navy's Ability to Improve Shipyards」

비 중이거나 또는 정비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해군이 정비를 위해 핵추진공격잠수함을 운용하지 않는 불가동을 목표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미국 해군의 수상함 정비율은 2021년에 44%에서 2022년에는 36%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GAO는 미국 해군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유지보수에 평균 26일 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5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양력 확보는 미국에 매우 절실한 과제

미국은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해군의 전력증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해양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하여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부터 함정을 구매하거나 정비하는 등 아웃소싱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 및 일본의 조선소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기간 내에 미국 군함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건조할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미국 해군 해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2023년 ‘중국과 북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에 미국 해군 모항의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미국 CNN은 중국 해군력은 이미 세계 최고로서 함정 건조 속도도 월등히 빨라 양국의 해군력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수적, 질적인 팽창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하면서 한국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일본의 마야(Maya)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였다.⁷⁸⁾ 그러면서 월등한 중국의 함정 건조 속도와 더불어 구축함 등 중국이 건조 중인 신형 함정 중 일부는 미국 함정보다

78) Brad Lendon,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s. And they’re not American”, 2023, (CNN, <https://edition.cnn.com/2023/06/02/asia/japan-south-korea-naval-shipbuilding-intl-hnk-ml-dst/index.html>, 검색일: 2023.06.12.)

강력한 화력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핵심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에서 구축함을 생산하거나 정비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전보장회의(Shangri La Dialogue)⁷⁹⁾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함정을 본토로 보내어 정비하는 대신 일본이나 한국 조선소에서 MRO를 수행함으로써 본토 조선소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⁸⁰⁾는 주일 미국대사가 이러한 협력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미국 해군은 일본, 필리핀, 인도 조선소를 이용하여 군수지원함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에 미국은 구축함, 순양함, 수륙양용함 등 일본에 전진배치된 태평양사령부 7함대 군함의 MRO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미국 당국자도 일본 조선소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미군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RO를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로 확대하는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2. 함정 협력의 걸림돌, Jones Act

미국 방산시장은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방산업체 자력만으로 진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특히, 함정은 존스법(Jones Act)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Jones Act은 함정의 소요와 건조 및 정비 전 과정에서 철저한 미국 정부 통제 아래 본토 내에서만 진행되도록 강제되어 있다. Jones Act는 미국

79)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하에 세계 각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

80) Ken Moriyasu, “U.S. turns to private Japan shipyards for faster warship repairs”, 2023,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U.S.-turns-to-private-Japan-shipyards-for-faster-warship-repairs>, 검색일: 2023.06.12.)

내 연안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다음의 세 요건을 강제하고 있다. ① 미국 항구를 오가는 화물운송의 선박은 미국 회사가 소유해야 하며, 소유권의 75% 이상은 반드시 미국 시민이 보유해야 한다. ② 선박 승무원은 대다수의 미국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선박은 미국 본토에서 건조되고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사항 때문에 함정의 미국 수출은 높은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함정을 신속히 건조하고 적정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활한 MRO를 지원해야 하나, 미국의 조선소 함정 건조 및 MRO 능력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Jones Act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DC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무역정책 연구센터장은 Jones Act는 실패한 법률로 더 이상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주장하였다.⁸¹⁾ 그는 Jones Act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외국의 경쟁이 금지되어 미국 해운사들은 그들이 사용할 선박 건조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선박 노후화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enter for Naval Analyses) 보고서⁸²⁾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철도, 트럭, 항공 산업에 새로운 효율성과 활력을 불어넣었던 규제 완화의 물결이 Jones Act로 인하여 해양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외국 건조 선박에 비해 무려 6~8배나 비싸서 그로 인하여 선박 수도 훨씬 적으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화물선과 유조선 생산은 대체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CNN⁸³⁾은 중국에 대응하기

81) Daniel Ikenson, Colin Grabow, & Inu Manak. (2018). 「The Jones Act: A Burden America Can No Longer Bear」. CATO Institute.

82) Tim Colton, “Deliveries from U.S. Shipyards Since 1987”, 2021, (<http://shipbuildinghistory.com/statistics/recent.htm>, 검색일: 2024.02.12.)

83) 서필웅, “CNN, 세종대왕함급 구축함, 美 비밀병기 떠올라”, 2023,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04508310?OutUrl=naver>, 검색일: 2023.06.12.)

위해 한국 또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Jones Act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미국 국방부는 국가 방위산업전략서(NDIS)에서는 탈냉전 이후 미국 방산 생태계 쇠퇴했다고 진단하고, 방산 생태계 확장 위한 개선책으로 생산역량 강화, 공급망 개선, 우방국 협업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짧은 기간에 방산역량 향상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도-태평양에서 일본 및 한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3. 미국과의 함정 협력방안

미국이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대상을 찾는다면 기술력으로는 한국이 유리하지만, 일본과의 협력이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첫째, 남중국해를 기준으로 지리적인 차이는 없으나, 1972년부터 태평양사령부 7 함대가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점도 MRO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한국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24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90일 미만의 정비기간이 소요되는 주일미군의 항공모함, 구축함 등의 MRO를 일본 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둘째, 일본은 미국과 더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당사자로서 쿼드에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하여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확대하려는 미국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물론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안보협력의 대가로 방산협력의 확대 등을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도 RDP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 RDP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16년에 RDP를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 등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SM-3 Block-II에 이어서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의 공동연구개발에도 합의했다. 우방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안보협력 수단으로 RDP를 활용해 오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함정의 아웃소싱 대상을 고려할 때 일본에 비해 한국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K-방산의 약진은 세계 1위의 미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내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경계의 눈초리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함정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탁월하게 우세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비슷하거나 대등하다면 빠른 발전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세계 방산 9위의 한국 보다는 48위인 일본과의 협력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K-방산이 기술적으로는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미국의 일본 또는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MRO 협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적인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게 잭팟과도 같은 큰 선물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미국과 신속하게 RDP를 체결하고 한국형 협력모델로서 함정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해군 함정의 건조 및 MRO를 일본이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일본의 함정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일본 해군의 전력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군사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대륙으로의 진출을 열망하였던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정사업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한국에게 씻을 수 없는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함정 협력은 국내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RDP에서 한국형 협력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 본토에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도 있으나, 미중 패권경쟁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 본토보다는 한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함정 건조 및 MRO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MRO 연구보고⁸⁴⁾에 따르면 <그림 34>에서와 같이 미중 패권경쟁 및 북한의 빈번한 도발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은 2021년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현재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도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외에도 인도나 일본과 주변 국가들도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해군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첨단기술을 탑재하는 등 함정 현대화에 대한 투자 증가로 향후 이 지역의 MRO 수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2022년~2031년간 지역별 해군함정 MRO 시장 성장률

<Fig. 34> Growth Rate of MRO Market by Region from 2022 to 2031

84) “Naval Vessel MRO Market Size & Share Analysis: Growth Trends & Forecasts(2023~2028)”, 2023, (Mordor Intelligence,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naval-vessels-maintenance-repair-and-overhaul-market>, 검색일: 2024.06.18.)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RDP 체결로 인하여 K-방산이 급격하게 발전하거나 미국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P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RDP를 통해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K-방산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미국 방산시장에서의 차별적인 BAA 적용을 면제받음으로써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진출 및 확대를 위한 디딤돌을 구축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 없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방산교역의 극심한 불균형 해소 또는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 10위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방산교역은 매우 초라하다. RDP 체결을 계기로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기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첨단 국방기술을 축적하고 K-방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4대 방산강국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저가 위주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다. K-방산의 주요 수출품목이 중저가 위주에서 첨단 고부가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RDP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면서 미국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여 한국형 RDP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중 패권경쟁으로 심화되는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력 열세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에게 매우 절실한 함정분야의 협력은 유용한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SCM, DTICC, DTSCM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기적인 회의체⁸⁵⁾를 구성하여 안보협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RDP

85)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 한미 국방부장관 연례회의로서

의 정례회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체들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기에는 RDP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에는 SCM, DTICC 및 DTSCM을 개최하여 국방부장관 등 고위급 대면접촉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는 RDP 정례회의에서는 방산협력의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SCM, DTICC, DTSCM에서 구체화하는 것도 한미 방산협력을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 및 안보현안을 협의한다.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efense Technological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DTICC) :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분과위원회로서 한미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한다. 방위사업청장과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이 주관하여 연례적으로 개최
한미 국방기술보안협의체(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DTSCM) :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술보안청 상호간의 방산기술보안 및 수출통제 절차에 대하여 협의하는 연례회의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K-방산의 수출 호조는 자체적인 수출역량의 성장도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안보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따라서, K-방산이 자생력을 가지고 향후에도 글로벌 브랜드를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실적을 유지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서 미국 방산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RDP 체결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상호 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의 영향에 대하여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RDP 체결 전후의 주요 8개국 방산수출입 실적을 비교해봄으로써 RDP 체결로 글로벌 방산수출 및 미국과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RDP 협상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한국형 RDP 협력모델로서 함정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를 모두 비교하여 그 함의 및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절충교역 축소, 국내 연구개발의 잠식 등은 사실과 달랐으며 유효기간이나 자유로운 종결 등 안전장치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가 안보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FTA와는 성격이 다른 협정이라 하겠다. RDP를 체결한 주요 8개국에 대한 방산수출입 데이터를 분석 결과에서도 RDP 체결로 해당 국가들의 방산시장이 잠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오히려 대다수 국가들은 RDP 체결 이후 미국으로의 방산수출은 늘고

방산수입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RDP는 방산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RDP를 활용해야 하겠다. RDP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하고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려면 RDP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RDP 체결로 미국 방산시장에서의 차별적 비용 부과를 면제받아 가격 경쟁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K-방산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미국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영국 등 RDP를 체결한 12개 국가가 미국 방산수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RDP 체결없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RDP를 체결하여 이러한 불공정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RDP 체결을 통해 극심한 한미 방산교역 불균형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 방산수출 10위이지만, 미국과의 방산교역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RDP 체결을 기회로 극심한 한미 방산교역 불균형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국내 방산시장이 잠식되어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미 국외구매의 78%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반면 미국 수출은 거의 전무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제는 K-방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존도는 낮추고 미국 수출은 늘리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K-방산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환점으로 RDP를 활용해야 한다. 중저가 중심의 가성비로 대변되는 K-방산을 첨단고가 무기체계 수출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RDP를 활용하여 K-방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첨단무기체계 위주의 수출구조로 변화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확대하여 선진 국방기술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은 2016년 RDP를 체결하여

미국과의 SM-3 공동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한 요격미사일을 미국과 공동연구개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우리도 RDP를 통해 공동연구개발 등 방산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축적으로 고가 첨단무기체계로의 수출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한미 방산협력 위하여 협력분야, 즉 한국형 RDP 협력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상호호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RDP 협정을 고려하여 한국형 협력모델은 미국의 Needs와 한국의 강점이 부합되도록 선정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함정 MRO 분야이다.

본 논문은 다음 측면에서 학술적,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RDP를 체결한 28개 전체 협정문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RDP 영향성을 종합적으로 정성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했던 RDP를 체결한 주요국가들의 방산수출입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RDP 체결로 인한 영향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RDP협정문 정성적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둘째, 미국 국방부와의 RDP 체결을 위한 활용방안, 특히 상호 윈-윈 가능한 한국형 협력모델로서 함정건조 및 MRO를 제안하는 등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특히, 공동연구개발, 절충교역, 한국형 협력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24년 10~11월 RDP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향후 협상 과정 및 RDP 체결 이후 활용 과정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미국과의 RDP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 RDP를 체결한 28개국의 협정서 문항을

기준으로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주요 8개국에 대한 수출입 실적 분석을 시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RDP를 체결한 주요국의 수출입 실적 분석은 SIPRI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 신뢰성 문제이다. SIPRI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수출입 실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정확한 방산수출입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SIPRI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국의 방산수출입 데이터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국제기구가 없으며, SIPRI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방산수출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방산수출입 분석을 통한 추세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RDP는 국가별로 방산 경쟁력, 안보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방위산업은 특정한 일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모든 외생변수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방산수출입 실적만으로 RDP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국가별 방산수출입 분석을 통하여 RDP 체결로 인한 수출입 실적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RDP 체결 전후로 방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김만기, 김영주, 배선미, & 권영민. (2022).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의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2] 김미정, 윤정선, & 안영수. (2020).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KIET 산업연구원.
-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통령실.
- [4] 박태준. (2015). 「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 전략」. 북코리아.
- [5] _____. (2023).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 전략」. 책과나무.
- [6] 신현인. (1999). 「한미 상호조달 양해각서 체결의 타당성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6] 심순형, & 김미정. (2023).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이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7] 유규열 (2007).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국방대학교.
- [8] 유진우. (2023). 「한국 무기·총포탄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수출성과 결정요인 연구」. 광운대학교.

- [9] 전세훈, 신동협, 최규상, 정재영, & 김민주. (2020). 「한미 상호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안보경영연구원.
- [10] 방위사업청. (2023).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 [11] Brinley. (2023). 「Letter of UK Aerospace, Defence & Security Industries」.
- [11] Bruce Vaughn. (2007). 「The U.S.-Australia Treaty on Defense Trade Cooper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 [12]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2). 「Public Budget databas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3」.
- [13]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2022).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he Department's Bi-Annual Report on Made in America Laws」.
- [14] U.S. DoD. (1963). 「U.S.-Canada RDP-MOU」.
- [15] _____. (1975). 「U.S.-Swiss RDP-MOU」.
- [16] _____. (1975). 「U.S.-U.K. RDP-MOU」.
- [17] _____. (1978). 「U.S.-Norway RDP-MOU」.
- [18] _____. (1978). 「U.S.-France RDP-MOU」.
- [19] _____. (1978). 「U.S.-Netherlands RDP-MOU」.
- [20] _____. (1978). 「U.S.-Italy RDP-MOU」.

- [21] _____. (1978). 「U.S.-Germany RDP-MOU」.
- [22] _____. (1979). 「U.S.-Portugal RDP-MOU」.
- [23] _____. (1979). 「U.S.-Belgium RDP-MOU」.
- [24] _____. (1980). 「U.S.-Denmark RDP-MOU」.
- [25] _____. (1980). 「U.S.-Turkey RDP-MOU」.
- [26] _____. (1982). 「U.S.-Spain RDP-MOA」.
- [27] _____. (1986). 「U.S.-Greece RDP-MOA」.
- [28] _____. (1987). 「U.S.-Sweden RDP-MOU」.
- [29] _____. (1987). 「U.S.-Israel RDP-MOU」.
- [30] _____. (1988). 「U.S.-Egypt RDP-MOU」.
- [31] _____. (1991). 「U.S.-Austria RDP-MOU」.
- [32] _____. (1991). 「U.S.-Finland RDP-MOU」.
- [33] _____. (1995). 「U.S.-Australia RDP-MOA」.
- [34] _____. (2010). 「U.S.-Luxembourg RDP-MOU」.
- [35] _____. (2011). 「U.S.-Poland RDP-MOU」.

- [36] _____. (2012). 「U.S.-Czech RDP-MOA」.
- [37] _____. (2016). 「U.S.-Slovenia RDP-MOA」.
- [38] _____. (2016). 「U.S.-Japan RDP-MOU」.
- [39] _____. (2016). 「U.S.-Estonia RDP-MOA」.
- [40] _____. (2017). 「U.S.-Latvia RDP-MOA」.
- [41] _____. (2021). 「U.S.-Lithuania RDP-MOA」.

정기 간행물

- [1] 김종열. (2013). 「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3(5), 27-35).
-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3] 류병운. (2007).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 :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홍익법학, 8(1), 175-196).
- [4] 박성완. (2019). 「EU 방위조달지침의 개관」. (선진국방연구, 2(3), 53-70).
- [5] 신동협. (2020). 「한·미 상호조달 체결에 대한 방산 수출 경쟁력 분석 연구」. (한국국방기술학회, 2(3), 5-10).

- [6] 이소영. (2020). 「미국의 자국산구매우선법과 상호국방조달협정에 관한 소고」. (고려법학, 98(-), 199-241).
- [7] 유규열. (2008).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따른 한·미 상호국방조달 MOU 추진방향」. (무역학회지, 33(2), 1-24).
- [8] 유형곤. (2022). 「한-미간 RDP-MOU(방산 FTA) 체결, ‘득’과 ‘실’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국방기술포디움, 7(-), 26-31).
- [9] 정책브리핑. (2022). 「한·미 정상 공동성명」.
- [10] 최기일. (2022).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9(2), 45-56).
- [11] 황동준. (1988). 「한·미 방산협력 - 안보증진을 위한 새로운 단계」. (국방과 기술, 116(10), 44-57)
- [12] 홍영식, 김만기, & 손영환. (2018).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의 예상 영향 연구」. (아태연구, 25(4), 5-30).
- [13] Miller, & Drew B. (2009). 「Is it time to reform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s?」. (Public Contract Law Journal, 39(1)).
- [14] U.S. GAO. (1991). 「European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U.S. Defense Trade and Cooperation」. (GAO/NSIAD-91-167, 4(-), 36-40).
- [15] _____. (1992). 「International Procurement: NATO Allies' Implementation of Reciprocal Defense Agreements」. (GAO/NSIAD-92-126).
- [16] _____. (2005). 「Federal Govern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sult in Waivers of Some U.S. Domestic Source Restrictions」. (GAO-05-188).

[17] _____. (2017). 「Government Procurement; United States Reported Opening More Opportunities to Foreign Firms Than Other Countries, but Better Data Are Needed.」. (GAO-17-168).

[18] _____. (2018). 「Buy American Act: Actions Needed to Improve Exception and Waiver Reporting and Selected Agency Guidance」. (GAO-19-17).

[19] _____. (2020). 「Navy Ship Maintenance: Actions Needed to Address Maintenance Delays for Surface Ships Based Overseas」. (GAO-20-86).

[20] SIPRI. (2024). 「Arms Transfers Database 2019~2023」.

[21] Pieter Wezeman, Katarina Djokic, Mathew George, Zain Hussain, & Siemon Wezeman. (2024).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SIPRI Fact Sheet).

부 록

리투아니아(Lithuania) RDP 기본협정서

RDP 협정서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2010년 이후 그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 및 표준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체결하게 될 RDP 기본협정서도 그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3년 RDP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실무회의에서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체결한 리투아니아 협정서를 기준으로 RDP 협상을 할 것을 한국에 요청하였다. 따라서, 한미간 어떠한 내용으로 RDP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게 될지 리투아니아 RDP 협정서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Concerning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Short Title : U.S. - LT RDP Agreement)

Signed at Washington December 13, 2021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3, 2021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미국 정부 및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는

BEARING in mind their partnership i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상호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DESIRING to promote the objectives of 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interoperability, and mutual logistics support throughout their defense relationship; 방산협력 전반에 걸친 합리화, 표준화, 상호운용성 및 상호 군수지원목표 증진을 희망하며

RECOGNIZING their longstanding defens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 Agreement on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signed in Vilnius on January 17, 2017, which entered into force February 27, 2017; 2017년 1월 17일 Vilnius에서 체결된 미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의 오랜 국방협력 관계 및 2017년 2월 27일 발효된 국방협력 협정을 인정하고

DESIRING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m; 양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강화하기를 원하며

SEEKING to achieve and maintain fair and equitable opportunities for the industry of each Party to participate in the defense procurement programs of the other; 양 국가의 방산업체가 상대국가 방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DESIRING to enhance and strengthen each country’s industrial base; 양 국

가의 방위산업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DESIRING to promote the exchange of defense technology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policies; 양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는 국방과학 기술의 교환이 촉진되기를 원하며

DESIRING to make the most cost effective and rational use of the resources allocated to defense; and 국방에 할당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DESIRING to remove discriminatory barriers to procurements of supplies or services produced by industrial enterprises of the other country to the extent mutually beneficial and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상호이익이 되고 각국의 법률, 규정, 정책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가의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조달에 대한 차별적 장벽을 제거하기를 희망하면서

HAVE agreed as follows: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RTICLE I. Applicability

1. This Agreement covers the acquisition of defense capability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through: 본 협정서는 다음과 같이 미국 및 리투아니아 국방부의 국방 획득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a.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b. Procurements of supplies, including defense articles; and 보급품(방산물

자를 포함)의 조달

c. Procurements of services, in support of defense articles. 방산물자를 지원하는 용역의 조달

2.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either: 본 협정서에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a. Construction; or 건설

b. Construction material supplied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건설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건설자재

ARTICLE II. Principles Governing Mutual Defense Procurement Cooperation

1. Each Party recognizes and expects that the other uses sound processes for requirements definition, acquisition, and procurement and contracting, and that these processes both facilitate and depend on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the conduct of procurement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processes are consistent with the procurement procedures in Article V (Procurement Procedures) of this Agreement. 당사자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획득, 조달 및 계약에 관해 상대국가의 적절한 절차를 따를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절차는 조달의 투명성과 완전성을 증진한다고 기대한다. 양 국가는 그러한 절차가 본 협정서 제5조의 조달절차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Each Party undertakes the obligations in this Agreemen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shall obtain reciprocal treatment from the other Party. 당사자는 상대국가로부터 상호호혜 원칙에 의한 대우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 협정서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한다.

3. Each Party shall, consistent with its national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give favorable consideration to all requests from the other Party for cooperation in defense capa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procurement, and logistics support.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 규정, 정책 및 국제 의무와 일치되도록 상대국가의 방산 연구개발, 양산, 조달 및 군수지원 협력 요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4. Consistent with its national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for so long as the other Party provide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to the products of th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각국의 법률, 규정, 정책 및 국제적인 의무와 일치하며, 상대국가가 본 협정서 조항에 따라 상대국가 제품에 대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는 한 당사자는

4.1 Facilitate defense procurement while aiming at a long-term equitable balance in the Parties' respective purchas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apabilities of its defense industrial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s.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에 대한 능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서로의 동등한 균형을 목표로 하여 국방조달을 촉진한다.

4.2 Remove barriers both to procurement and to co-production of supplies produced in the other country or services performed by sour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ial enterprises") established in the other country. This includes providing to industrial enterprises of the other countr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to domestic industrial enterprises. When an industrial enterprise of the other country submits an offer that would be the low responsive and responsible offer but for the application of any buy-national requirements, both Parties agree to waive the buy-national requirement. 상대국가에서 설립된 공급원(이하 “방산업체”)이 수행하는 용역 또는 상대국가에서 생산하는 공급품 조달 및 공동생산에 대한 장벽을 없앤다. 여기에는 상대국가의 방산업체에 대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하여 우대 조치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대국가의 방산업체가 응답이 저조하고 책임감 있는 제안서를 제출할 때, 자국산 구매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양 국가는 자국산 구매 요건을 면제하도록 조치하는데 동의한다.

4.3 Utilize contracting procedures that allow all industrial enterprises of both countries, which have previously not been suspended or disbarred, to compete for procurements covered by this Agreement. 이전에 중단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양국의 모든 방산업체가 본 협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달을 위하여 경쟁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약절차를 이용한다.

4.4 Give full consideration to all responsible industrial enterprise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Lithuania,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and criteria of the respective procuring agencies. Offers must satisfy requirements for performance, quality, delivery, and cost. Where potential offerors or their products must satisfy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award of a contract, the procuring Party shall give full consideration to all applications for qualification by industrial enterprises of the other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policies,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procuring Party. 양 국가의

조달기관 정책 및 기준에 의해 미국 및 리투아니아의 모든 책임있는 방산업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안은 성능, 품질, 인도기간 및 비용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잠재적인 제안자나 그 제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조달 당사자는 그 당사국의 법률, 규정, 정책, 절차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상대국가 방산업체의 자격 신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5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requirements and proposed procure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 (Procurement Procedures) of this Agreement to ensure adequate time for industrial enterprises of the other country to qualify for eligibility, if required, and to submit an offer. 상대방 국가의 방산업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본 협정서 제5조의 조달절차에 따라 요구사항 및 제안된 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6 Inform industrial enterprises choosing to participate in procurements covered by this Agreement of the restrictions on technical data and defense items (defense articles and services) made available for use by the other Party. Such technical data and defense items made available by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bidding on, or performing, defense contracts covered by this Agreement, except as authorized, in writing, by those owning or controlling proprietary rights, or furnishing the technical data or defense items. 본 협정서에 포함된 조달 참여를 결정한 방산업체들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국방품목(국방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린다. 계약 당사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및 국방품목은 본 협정서에 의한 국방계약 입찰이나 계약의 이행 목적 외에 다른 목

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단, 소유권을 보유 또는 통제하거나 기술자료 혹은 국방품목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7 Give full protection to proprietary rights and to any privileged, protected, export-controlled, or classified data and information; and shall take all lawful steps available to prevent the transfer of such data and information, supplies, or services to a third country or any other transfere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소유권, 특별권한, 보호권한, 수출통제 또는 비밀자료 및 정보는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최초에 권한이 있는 당사자에 의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자료, 정보, 공급품이나 용역을 제3국 또는 기타 양수인에게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8 Exchange information on pertinent laws, implementing regulations, policy guidanc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관련된 법률, 시행 규칙, 정책 지침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9 Annually exchange statistics demonstrating the total monetary value of defense procurements awarded to industrial enterprises of the other country during the prior year. An annual summary shall be prepared on a basis to be jointly decided. 전년도 상대국가의 방산업체가 수주한 국방조달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요약본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작성되어야 한다.

4.10 Provide appropriate policy guidanc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in its respective defense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각국의 국방조직 내에 본 협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침 및 행정절차를 제공한다.

5. This Agreement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authority to authorize the export of defense items (defense articles or defense services), including technical data, controlled by one or the other Party under its applicabl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Further, any export subject to the national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of one of the Parties, must be compliant with such laws and regulations. 본 협정서는 수출통제법 및 규정에 따라 한쪽이나 양쪽 당사자에 의해 통제되는 기술자료를 포함하는 국방품목(국방 물자 또는 용역) 수출 허가 권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의도하지도 않는다. 또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국가수출통제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수출은 해당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This Agreement shall not serve as a basis to waive any export control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applicable to other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계약이나 협정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ARTICLE III. Offsets

This Agreement does not regulate offsets. The Parties agree to discuss measures to limit any adverse effects that offset agreements have o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of each country. 본 협정서는 절충교역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절충교역이 각국의 방위산업 기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

ARTICLE IV. Customs, Taxes, and Duties

When allowed under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Parties, the Parties agree that, on a reciprocal basis, they shall not consider customs, taxes, and duties in the evaluation of offers, and shall waive their charges for customs and duties for procurement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당사자들 각각의 국가 법률, 규정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 시 세금이나 관세 및 의무를 고려하지 않으며, 본 협정서가 적용되는 조달에 대하여는 관세 및 조달세를 면제한다.

ARTICLE V. Procurement Procedures

1. Each Party shall proceed with its defense procurement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당사자들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국방조달을 이행하여야 한다.
2. To the extent practicable, each Party shall publish, or have published, in a generally available communication medium a notice of proposed procure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regulations, policies,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procurements shall be published in adequate time to enable interested industrial enterprises to complete the bidding process. Each notice of

proposed procurement shall contain, at a minimum: 당사자는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정책, 절차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제안된 조달에 대한 통지를 일반적인 통신매체에 게시하도록 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조달에 관심 있는 방산업체가 입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달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적절한 시기에 공지해야 한다. 조달 제안에 대한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계약 대상

b. Time limits set for requesting the solicitation and for submission of offers; 청약을 요청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설정된 기한

c. An address from which solicitation documents and related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청약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3. Upon request, an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regulations, policies,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rocuring Party shall provide industrial enterprises of the other country copies of solicitations for proposed procurements. A solicitation shall constitute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법률, 규정, 정책, 절차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조달 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국가 방산업체에 제안된 조달에 대한 청약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청약은 경쟁의 참여를 권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a. The nature and quantity of the supplies or services to be procured; 조달의 대상이 되는 공급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성질 및 수량

b. Whether the procurement is by sealed bidding, negotiation, or some other procedure; 조달 진행방식(비공개입찰, 협상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c. The basis upon which the award is to be made, such as by lowest price or otherwise; 최저가 등 그 밖의 방법과 같이 계약의 수준 기준

d. Delivery schedule; 납품 일정

e. The address, time, and date for submitting offers as well as the language in which they must be submitted;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주소, 시간 및 날짜와 제안서 작성 언어

f. The address of the agency that will be awarding the contract and wi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y information requested by offerors;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자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주소

g. Any economic requirements, financial guarantees, and related information required from suppliers; 공급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모든 경제적 요구사항, 재정적 보증 및 관련 정보

h. Any technical requirements, warranties, and related information required from suppliers; 공급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모든 기술 요구사항, 보증 및 관련 정보

i. The amount and terms of payment, if any, required to be paid for solicitation documentation; 청약 서류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 및 지급조건(있는 경우)

j. Any other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competition; and 기타 입찰 경쟁의 참여조건

k. The point of contact for any complaints about the procurement process. 조달 절차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4. Consistent with it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rocuring Party shall, upon request, inform an industrial

enterprise that is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 process of the reasons why. 법, 규정, 정책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조달 당사자는 요청을 받으면 조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방산업체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5. Consistent with it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rocuring Party shall: 조달 당사자는 법률, 규정, 정책 및 국제 의무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5.1 Upon award of a contract, promptly provide notification to each unsuccessful offeror that includes, at a minimum: 계약이 체결되면, 선택되지 않은 각 제안자에게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통지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uccessful offeror; 선정된 제안자 이름 및 주소

b. The price of each contract award; and 각 계약의 금액

c. The number of offers received: 받은 제안 수

5.2 Upon request, promptly provide unsuccessful offerors pertine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asons why they were not awarded a contract. 요청 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6. Each Party shall have published procedures for the hearing and review of complaints arising in connection with any phase of the procurement process to ensure tha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complaints arising under procurements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equitably and expeditiously resolved between an offeror and the procuring Party. 당사자는 조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검토 절차를 발표하여 가능한 이 협정서에서 다루는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

하여 제안자 및 구매 측 사이에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ARTICLE VI. Industry Participation

1.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involve both Parties.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benefits each Party's industrial enterprises choosing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s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is Agreement to its industrial enterprises. 본 협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양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본 협정서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자의 방산업체를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협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informing the relevant industrial enterprises within its country of the existence of this Agreement. 각 당사자는 자국 내 관련 방산업체에 본 협정서의 존재를 알릴 책임이 있다.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primary responsibility for finding business opportunities rests with the industrial enterprises of each country. 당사자들은 사업의 참여기회를 찾는 주요 책임이 각 국가의 방산업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4. The Parties shall arrange for their respective procurement and requirements offices to be familiar with this Agreement so that, consistent with their normal practices and procedures, those offices may assist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untry of the other Party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proposed procurements,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appropriate documentation. 당사국들은 각각의 조달 요구조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 협정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준비해서 정상적인 관행과 절차에 따라 당사국

의 방산업체가 제안된 조달, 필요한 자격조건 및 적절한 문서작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RTICLE VII. Security, Release of Information, and Visits

1. Any classified information or material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ransmitted, stored, handled, and safeguard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Concerning Securit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igned at Vilnius November 21, 1995, and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1, 1995. 본 협정서 조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모든 비밀 정보 또는 자료는 1995년 11월 21일 Vilnius에서 서명되고 1995년 11월 21일 발효된 비밀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에 관한 미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 간의 보안협정에 따라 사용, 전송, 보관, 관리 및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2. Both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industrial enterprises within each Party's respective country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pertaining to security and safeguard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방산업체가 자국 내에서 각국의 보안 및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Each Party shall take all lawful steps available to it to prevent the

disclosure to a third party of unclassified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from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unless the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consents in writing to such disclosure. 각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당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Each Party shall permit visits to its establishments, agencies, and laboratories, and shall not impede visits to contractor industrial facilities, by employees of the other Party or by employees of the other Party's contractors, provided that such visits are authorized by both Parties and the employees hav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s and a need-to-know. 각 당사자는 방문이 당사자 쌍방에 의해 승인되고 직원들이 적절한 보안 허가 및 방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시설, 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하며, 상대방 직원 또는 상대방 계약자 직원의 산업시설 방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Requests for visits under the preceding section shall be coordinated through official channels and shall conform to the established visit procedures of the host Party. All visiting personnel shall comply with security and export control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Any information disclosed or made available to authorized visiting personnel shall be treated as if supplied to the Party sponsoring the visiting personnel and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앞 절에 따른 방문 요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협조되어야 하며 주최자에 의해 정해진 방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모든 방문인원은 주최국의 보안 및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된 방

문인원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된 모든 정보는 방문인원을 후원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며, 본 협정서의 조항에 따른다.

ARTICLE VIII.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1.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Acquisition & Sustainment) shall be the responsible authority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Director, Defence Materiel Agency shall be the responsible authority i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미국 국방부의 획득운영유지차관은 본 협정서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이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국방물자국 국장은 이 협정서 이행을 위한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이다.

2. Each Party shall designate points of contact to represent its responsible authority. 각 당사자는 해당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3.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s responsible authority shall meet on a regular basis to review progress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e representatives shall discuss procurement methods used to support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acquisition of defense capability; annually review the procurement statistics exchanged as agreed under subparagraph 4.9. of Article II (Principles Governing Mutual Defense Procurement Cooperation) of this Agreement; identify any prospective or actual changes in national laws, regulations, policies, procedures,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that might

affect the applicability of any understandings in this Agreement; and consider any other matters relevant to this Agreement.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기관의 대표자들은 본 협정서의 이행상황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대표자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득에 있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사용되는 조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본 협정서 제2조(상호방위 조달 협력에 관한 원칙)의 규정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매년 4.9항에 따라 합의된 조달 통계를 검토한다. 이 협정서에서의 모든 양해사항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법률, 규정, 정책, 절차, 국제 의무에서 예상되거나 또는 실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한다. 본 협정서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4. Each Party shall, as necessary, review the principles and obligation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in light of any subsequent changes to its national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uropean Union directives and regulations, and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to decide jointly whether this Agreement should be amended. 각각의 당사자는 필요에 의해 EU 지침 및 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의 법률, 규정, 정책 및 국제적 의무에 대한 후속 변경을 고려하여 본 협정서에 의해 결정된 원칙 및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본 협정서의 개정 여부를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

5.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avoid commitments that could conflict with this Agreement. If either Party believes that such a conflict has occurred, the Parties agree to consult to seek resolution. 각 당사자는 본 협정서와 상충될 수 있는 약속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쪽의 당사자가 이러한 충돌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는 데 동의한다.

ARTICLE IX. Annexes and Amendments

1. Annexes may be added to this Agreement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n Article of this Agreement and any of its Annexes, the language in the Agreement shall prevail. Such annexes shall be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and considered an integral part thereof.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본 협정서의 부속서가 추가될 수 있다. 본 협정서 조항과 부속서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서의 언어가 우선한다. 부속서는 본 협정서의 일부로 포함되며, 협정서의 필수부분으로 간주된다.

2. This Agreement, including its Annexes (if any), may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부속서를 포함하여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ARTICLE X.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by both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ten years.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upon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본 협정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협정서는 상대국가에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2.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contracts entered into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본 협정서 종결로 인하여 협정서 유효기간 동안에 체결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양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들이 본 협정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한다.